

K A

Korean Americ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Since 1983

C

2024
 **KACPA**
JOURNAL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Vol.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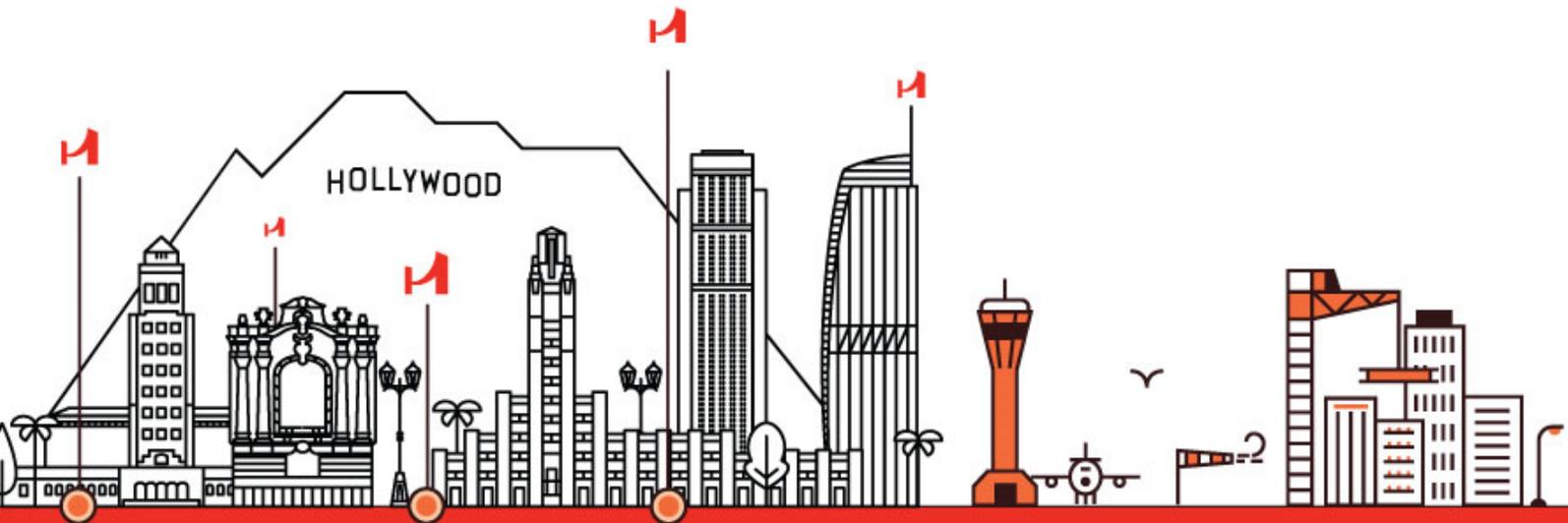
P A

한미은행에서

뱅킹은 더 편리하게
예금은 더 안전하게

40년간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해온 한미은행이
미 전역의 지점 네트워크와 온라인, 모바일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ank on Your Dreams
 Hanmi Bank



Bankers. Experts. Neighbors.

Hope can become reality through meticulous planning and execution. Building on 40 years of financial expertise, Bank of Hope has grown beyond the title of the largest Korean American bank to become one of the leading Asian American banks in the country. At Bank of Hope, we are committed to improving the value of our services as **Bankers**, providing comprehensive financial solutions as **Experts**, and being good **Neighbors** that foster growth in the communities we serve. Meet our experts today and begin turning your hopes into a reality by achieving your financial goals.



Bank of Hope[®]

Bankers. Experts. Neighbors.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Korean Americ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3010 Wilshire Blvd., Unit 313, Los Angeles, CA 90010

kacpa@kacpa.org | www.kacpa.org

MISSION

“Maintain high professional standards and support our members and the community at large.”

Purpose

The Society is established to advance the profession of accountancy in the State of California;
to encourage the maintenance of high professional standards for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o cultivate a cordial relationship among practicing accountants;
to promot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ervices rendered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to act in a representative capacity for the profession;
and to take an active part in the events and activities to be hosted by the LA Chapter of California Society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Vol.25 / 2024

KACPA Journal

1

Part I

From Colleagues

- 8 **IRS Enforcement Update, Collection Notices, Back Tax Resolution**
James M. Cha, *CPA*
- 12 **Financial Crisis and the Tyranny of Merit**
Dr. Joonho Lee / Associate Professor at Cal Poly Pomona
- 15 **Estate Plan, Probate, 709 and 706**
김윤한 / Yoon Han Kim, *CPA* / Attorney
- 16 **해외소득 및 해외자산을 미처 보고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해외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
한아름 / Agnes Ah Reum Han, *CPA*
- 18 **Carbon Credit Market**
최호건 / Hokon Choe, *CPA*
- 20 **절세 전략과 Long-Term Care Plan**
이성혁 / Stephen Lee, *CPA*
- 22 **Learning from Asian Indian Americans**
Steven Y. C. Kang, *CPA*
- 24 **Kanye and George**
William Lee, *CPA*

2

Part II

From invited Authors

- 31 **한국 내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이종건 / Jong Lee 변호사 / JKLawUSA, APC
- 33 **비즈니스의 보호 및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채희동 / Heedong Chae 변호사 / LUCEM
- 35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진희 변호사 / K-Law Consulting

- 38 직장 내 차별 소송 및 성희롱 소송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알아야 할 네 가지
박수영 변호사 / Barnes & Thornburg LLP
- 40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사전준비 및 혜택
Richard Myung / AGM Institute LLC
- 44 ROTH IRA Conversion
김석원 / Michael Kim / Blue Anchor Financial Services Inc.
- 45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HSA (Health Savings Account)
Joanne M. Park / UNI & Good Friend Insurance
- 47 2024년도 미국 부동산 전망
어태수 / Eric EO / Neozips

3

Part III

Business Events & Photo Gallery

- 50 KACPA 41st Installation
- 55 2023 KACPA Golf Tournament
- 56 2022 KACPA Christmas Party
- 58 2023 KASCPA Annual Conference
- 59 2023 KACPA Monthly Seminars
- 61 Media Coverage
- 62 2023 KACPA Saturday Hiking

4

Part IV

Board Members

- 64 KACPA Past Presidents & Board of the Directors
- 65 2023 KACPA Executive Officers
- 66 2023-2024 KACPA Business Schedule

발간사 (Publisher's Note)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3년여 지속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극복한 후의 2023년은 개인이나 사업체에게는 정상으로 회복하는 기간이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시장 금리 폭등 등 동포사회 재정 및 사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진행된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회계, 세법, 노동법, 상속, 증여, 은퇴 및 재정계획 등 새로운 지식과 규정들도 계속해서 변화가 있어 개인이나 사업체들에게 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는 끊임없이 진화해가는 환경 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과 동포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보전달을 위해 매달 연례 세미나와 부정기적으로 라디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포함 현시점 가장 관심 있을 주제들로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의 연간저널 'KACPA Journal 공인회계사' 제25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인쇄본 외에도 협회 웹사이트(kacpa.org)에도 웹저널 형식으로도 올려놓아 언제나 접속하셔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매년 협회 저널이 발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스폰서분들, 저널을 알차게 채워 주신 기고자분들, 편집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시호 CPA님과 웹저널을 처음 발족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Website & SNS Director 김영민 CPA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회원님들, 물심양면 헌신하시는 이사님들, 헌신적으로 시간을 내어 수고하시는 임원님들,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후원사님들이 없다면 협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
KACPA President 조 한 욱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Jo Han-yuk'.



File

Pay

Refunds

Credits

IRS Enforcement Update, Collection Notices, Back Tax Resolution

IRS Enforcement Update

Right before the COVID-19 pandemic, the IRS was fully prepared to ramp up their its enforcement activities for tax audit and collections. In March 2020, they placed a halt by temporarily suspending exams and issuing notices for tax liens and levies.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authorized over \$80 billion in supplemental funding to the IRS over a ten-year period to enhance the IRS's operation including to facilitate tax law enforcement. However, the 2023 budget deal struck by Congress and the president reduced that appropriation to \$60 billion of which \$25.7 Billion was allocated for enforcement and collection activities. Spending will increase every year until 2031, but most of the money is being spent in next the 2 years

The IRS has increased its full-time staff to nearly up to 90,000 full-time employees, a sharp increase from the 79,070 who were employed in 2022. They expect a net increase of 5,000 to 10,000 employees per year. The IRS has also had been actively hiring staff from accounting and law firms.

In September 2023, the IRS announced aggressive an **enforcement focus** to better detect tax cheating, identify emerging compliance threats, and improve case selection tools to avoid burdening taxpayers with needless 'no-change' audits. The following are the main focus areas.

- IRS will ramp up efforts on middle- and low-income people to take down scheme promising excessive EIC.
- Expanded work on digital assets - There is the potential for a 75% noncompliance rate.
- More scrutiny of FBAR violations - The IRS plans to audit the most egregious potential non-filer FBAR cases in fiscal year 2024.
- Improved audit selection fairness and equity - Black taxpayers, especially those who claim the EITC on their returns, are more likely to be audited than other taxpayers.
- High-wealth taxpayers with total positive income above \$1 million that who have more than \$250,000 in recognized tax debt. Revenue Officers will focus on these collection cases in FY 2024.

- Expansion of the Large Partnership Compliance program on large partnerships with complex structures and tax issues aided by AI.
- Labor brokers - The IRS has seen The IRS plans audits and investigations on contractors making payments to shell companies that funnel money back to the contractor.

Audits on Lower-Earning vs. High-Income Americans

There has been so much confusion on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s statement that the IRS will not increase audits on taxpayers earning less than \$400,000 a year to be audited relative to historical levels of 2018. On October 29, 2023, the new [IRS Commissioner](#) hinted at Possibility Audits May Rise for Americans Earning Under \$400,000 and they might fail to make good on this promise that the IRS will not audit the group.

Currently, the IRS is focused on high-income non-filers, corporations, and pass-through entities in an effort to go after tax evasion. However, small businesses with employees still face enforcement mechanisms like audits and collections. Any business with employees can be subjected to enforcement. So the rumor that no business under \$400k will be unaffected is not true.

There is no clear IRS definition of a 'high-income' taxpayer. Throughout the pandemic in August 2022, non-filers who have more than [\\$100,000](#) in reported income have been under IRS enforcement's priority as 'high income non-filers.'

Also, they rely on 1970s-era thresholds of \$200,000 Total Positive Income to define high-income returns. In 2022, about 75% of new audits were on taxpayers with income under \$200,000.

Collection Enforcement Update

On October 4, the IRS Acting Director for Collection Policy said that the normal collection and enforcement process will go forward on 2022 tax returns filed.

For all the past years' balances due, soft reminder collection notices will go out in waves. Then, starting 2024, collection enforcement is well expected to ramp up.

Collection Notice Stream & Collection Process

The flow of IRS collection and enforcement is basically:

1. Tax is assessed, and CP14 Balance Due and Demand for Tax Notice is sent.
2. If the balance is not paid within ten days, the statutory lien arises automatically.



3. If no collection alternative is set up with the IRS, CP501 and CP503 Balance Due Notice are issued.
4. The Notice of Federal Tax Lien will usually be filed at this time if the taxpayer owes more than \$10,000 with exceptions. This will give the taxpayer the right to request a 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
5. If no collection alternative is set up with the IRS, a CP504 Notice of Intent to Levy is issued by the IRS, providing the taxpayer 30 days to file a request for a CDP Hearing. An exception to issue the Final Notice applies to State Tax Refunds and Jeopardy Levy.
6.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with CDP rights is issued.
7. If the taxpayer fails to request the hearing, the IRS can move forward with enforcement action including levying the taxpayer's assets and income sources.

Collection Problem Types & Client Cases

If they don't respond to the collection notices, taxpayers who owe back taxes will get into many problems. The IRS and other tax agencies can apply tax liens, bank levies, wage garnishments, and seizures in an attempt to collect payment.

- **Passport Revocation or Denial**

If you owe back taxes, this might have consequences when you want to go travel. The IRS certifies tax debts of **\$59,000** or more (for 2023). If you pass this debt threshold, and receive a Notice of Federal Tax Lien (NFTL) and the period to challenge it has expired or a levy has been issued, certifying the delinquent debt to the State Department can lead to the denial, revocation, or limitation of your passport. The good news is that this certification can be reversed with our help.

Client Case) An attorney client who owed \$120,000 was planning for a family travel to Cancun. The IRS issued a NFTL on his house and certified the debt to the State. He was in the risk of canceling the travel. We were able to resolve in reversing the certification, so he could enjoy his family vacation.

- **Tax Lien**

It allows the government to seize and lay legal claim on assets and properties. A tax lien that shows up in the public records may make it difficult for you to refinance or get loans from potential creditors and lenders, or may not be able to sell property as well.

Client Case) Larry tried hard to refinance his home to pay down his federal back tax of over \$232,000. He had enough equity, but he couldn't get it due to the IRS's lien and reluctance to cooperate. The IRS initially imposed a payment plan amount that was impossible to pay. He became eligible to proceed with the refinancing process and pay off all of the back taxes.

- **Levy**

A levy occurs when the IRS collects your back taxes through seizing your real or personal property. Typically, levies are made on financial accounts held for you by others, such as a bank, a stockbroker, or an employer. Levies are placed on bank accounts, wages,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various income sources.

Client Case) Among many cases of Offer in Compromise, Hernando was struggling to pay his living expenses since he had fallen on hard times with his business. The initial IRS balance was about \$70,000 and he received Final Notices of Intent to Levy for several years. With our strategies and negotiations with the Offer Examiner, we were able to get his tax debt settled with an Offer in Compromise for the final \$180 amount.

- **Revenue Officer (field collector)**

Having a Revenue Officer (RO) assigned to collect back taxes doesn't have to be as scary, but it can be intimidating for someone who has never dealt with one before. The power of an RO lies in their ability to act decisively and autonomously in carrying out their duties.

For example, they can initiate audits, issue subpoenas, and enforce collection actions without seeking approval from a court or other higher authority. Failure to comply with an RO's demands can result in severe penalties and legal consequences, including wage garnishment, bank levies, and property seizures.

Working directly with an RO by a taxpayer is not recommended. An experienced professional with collection specialty has to should be sought for serious collection cases.

Collection Appeals

The taxpayer or representative may request an appeals conference with the IRS Office of Appeals to challenge many IRS collection actions or audit results to with the IRS Independent Office of Appeals. There are two main procedures: Collection Due Process & and Collection Appeals Program.

Collection Due Process (CDP) is available if you receive Notice of Federal Tax Lien Filing,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and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Notice of Jeopardy Levy, or Notice of Levy on Your State Tax Refund.

You may go through the Collection Appeals Program (CAP) for the tax lien, seizure, installment agreement. If you choose to go through the CAP, you cannot go to Tax Court if you disagree with the CAP decision.

If you receive a letter notifying you that your Offer in Compromise was rejected, you have 30 days to request an appeal of the decision.

A Trust Fund Recovery Penalty request for Appeals can be made with a Small Case Request or a Formal Written Protest.

In addition, a non-binding Fast Track Settlement (or Fast Track Mediation in collection cases) can be requested. A trained mediator uses mediation techniques and may offer a settlement proposal using Appeals authority.

Appeals programs include mediation call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diation is offered during pre-filing, examination, collection and appeals.

After an Appeals conference, another opportunity for settlement is made at a Post Appeals Mediation.



Closing

The IRS collection representation is an area totally different from tax preparation or audit representation. There are common misconceptions about negotiating tax debt with the IRS. Not all taxpayers qualify for Offer in Compromise, as the IRS has strict eligibility rules determined on facts and circumstances. However, the success rate can be higher with various strategies and negotiation skill.

In conclusion, seeking representation from a professional with specialized experience in negotiation and resolving tax collection matters is highly recommended. A specialist can properly evaluate eligibility, craft an effective strategy, and directly communicate with the IRS to navigate the process and achieve the best successful outcome.



James M. Cha, CPA
 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mycpacha@gmail.com



Dr. Joonho Lee
Associate Professor at Cal Poly Pomona
Joonholee@cpp.edu

Financial Crisis and the Tyranny of Merit

2020년 갑자기 들이닥쳐 큰 피해와 혼란을 안겨준 COVID-19 Pandemic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지만, 사실 2008년의 Financial Crisis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전 세계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은 그 원인 제공자로서 더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미국 재무부와 연준 (U.S Treasury and the Federal Reserve) 에서 구제금융 (Bail-out) 으로 총 \$950 Billion 을 사용했으며, 당시 네 번째로 큰 Investment Bank 였던 Lehman Brothers 가 파산했고, 세 번째로 큰 Merrill Lynch는 Bank of America에, Bear Sterns 은 J.P Morgan 에 헐값에 합병되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재무부와 연방은행에서 구제를 해준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사인 AIG 와 모기지 회사인 Freddie Mac & Fannie 도 각각 구제 금융을 받아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손실은 \$7.4 Trillion, 또한 부동산 가치의 \$3.4 Billion 사라졌고, 7.5 Million 의 실업자가 생겼으며, 실업률은 2010년에 10%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2008년의 Financial Crisis의 원인은 바로 Sub-Prime Mortgage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Enron과 MCI World Com 등의 회사가 Accounting Scandal로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욱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회계규정을 도입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Sarbanes Oxley Act (SOX)입니다. 이 SOX는 1934년의 Securities Exchange Act 이후 가장 큰 회계규정에 있어서의 변화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회계 개혁과 더불어서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이자율을 낮추고 저소득층이 손쉽게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이전에는 모기지 용자를 받을 수 없었던 Sub-Prime Credit Rating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용자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Zero Down Payment로 (Piggyback Mortgage) 주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은 이렇듯 급등한 수요와 낮은 이자율이 맞물려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주택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Refinancing이나 혹은 주택을 처분하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국민들에게 이러한 부동산 붐을 통해 숨통을 터준 것이지요.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한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손해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라고 하는 금융상품이 규제당국의 소홀함을 틈타 너무 크게 번성한 것입니다. MBS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Mortgage들을 섞고 묶어서 이것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 Mortgage를 섞으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렇게 파생상품이 생기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큰 마켓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큰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Sub-Prime Mortgage와 관련한 상품은 거들떠도 보지 않던 우량 은행들까지도 이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Mortgage를 갚을 수 없는 파산한 주택구매자들이 생기면서 생겼습니다. 실제로 2006년부터 이자율이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MBS가 없는 경우에는 Mortgage Loan을 해준 은행들이 Foreclosure를 통해 주택을 파는 등, 일정 정도의 손해만 감수하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문제가 엄청나게 부풀려진 MBS 시장 때문에 큰 교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모기지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들이 생기면서 Sub-Prime Mortgage Loan을 끼고 있던 MBS의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또한 Investment Bank들이 만든 Special Purpose Entities (MBS의 거간꾼 역할을 했으며 주로 단기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들이 자금줄이 막히며 파산하게 됩니다. 특히 은행들이 MBS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MBS들의 우량 혹은 불량 Credit Rating에 상관없이 모든 MBS가 외면받고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 것이지요. 사실 Sub-Prime Mortgage를 모두 손실로 처리하더라도 그 손실은 미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얼어붙은 시장의 실패로 인해 전체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회계학의 측면에서는 2008년의 Financial Crisis사태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Fair Value Accounting이 바람직한 것이냐? 시간이 지날수록 Fair Value Accounting이 Historical Cost Accounting에 비해 더욱 후원을 받으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과연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쟁이지요.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는 Financial Crisis를 일으키는데 Fair Value Accounting의 탓도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MBS의 가치가 실제보다 너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 폭락한 가치를 반영한 Fair Value Accounting 때문에 손실을 과다하게 처리하다 보니 은행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며 따라서 사태가 진정된 후에 Fair Value Accounting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Illiquid Market이 발생한 경우에는 Modeling에 근거한 Fair Value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등).



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값은 능력이 없지만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한 사람들, 없는 능력을 눈 감아준 Underwriters와 그것을 알고도 용자를 해준 은행들, 그렇게 생긴 모기지를 다른 곳에 팔고 계속해서 모기지 용자를 늘려간 은행들, 올바른 정보를 숨기고 MBS를 만든 금융기관들과 MBS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Credit Rating Agencies, 무엇보다 이런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던 SEC의 관리 소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Financial Crisis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의 회계기준으로 볼 때 회계적으로 Fair Value Accounting보다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첫 번째로 SPE에 넘긴 모기지를 Secured Loan으로 보지 않고 Sales로 처리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줄어든 liability로 인해 다시 추가적인 Loan을 발행할 수 있었던 것), 두 번째로는 투명한 Disclosure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계학 혹은 경제학적인 측면의 논의는 이만큼만 하고, 다른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10여 년 전 크게 인기를 불러일으켰던 책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한국어 제목은 '정의란 무엇인가' - 의 저자 Michael Sandel (Harvard 대학 교수)가 그 책에서 바로 이 Financial Crisis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논의의 초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원인들 중의 하나인 대형은행들이 Financial Crisis 이후에 정부의 보조 (혹은 국민들의 세금: 이 표현이 더 대중들을 화나게 만들지요)를 받고 살아남았으면서도 연말에 큰 보너스를 받았다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집니다. 이것을 알게 된 대중들이 크게 분노하고 성과급을 뺏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은행에서는 일부 보너스를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샌델교수는 왜 대중들이 분노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경영진의 탐욕에 분노했다. 하지만 곧 반박을 합니다.



경영진들은 언제나 항상 탐욕스러웠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탐욕스럽다. 그러므로 탐욕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좀 의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실패 (혹은 무능력)에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성공했을 때 보너스를 받는 것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실패를 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보너스를 챙기다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나서 셉텔교수는 이러한 논란이 일어났을 때 보여준 경영진들의 태도와 그들이 답변에 대해 주목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다. 쓰나미였다.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실패였지 나의 무능력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좋은 시절의 경우는 어떠한가? 은행들이 많은 돈을 벌고 그로 인해서 큰 보너스를 받을 때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시스템과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은행이 돈을 번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이 받는 큰 연봉과 보너스는 과연 적당한 대가인가?

셉텔교수는 Justice 이후에도 두 권의 책을 더 냈습니다. “What Money Can’t Buy?” 와 “The Tyranny of Merit: Can We Find a Common Good?” 마지막 책은 직역하면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우리는 공동선을 찾을 수 있을까?” 한국어로 출간된 책의 제목은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이러한 책들을 관통하는 그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주제 중의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Harvard, Yale, Princeton과 같은 명문대학을 가려고 기를 쓰지만, 그런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좋은 ‘능력’ (즉, 뛰어난 내신성적 과 시험성적, 과외활동, 봉사활동 등)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입학하지 못합니다. 입학 사정관들에게 물어보니 누가 봐도 합격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원자들의 숫자가 입학정원 숫자의 몇 배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학생들은 사실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다는 것이지요. 입학에 성공한 학생들은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역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입학한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떨어진 학생들은 불필요하게 절망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비관하게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을까요? 셉텔교수가 아주 좋은 제안을 합니다. 일단 입학해도 좋을 자질 (여러 가지 성적, 과외활동 등)을 보여준 학생들을 모두 추리자. 그리고 그 학생들만을 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입학생을 결정하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입학생을 뽑으면 입학생들과 그리고 떨어진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위에서 언급한 불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자만감은 줄어들어 겸손해지고, 떨어진 학생들의 절망감도 좀 덜 해지지 않겠습니까?

능력주의가 대접받고 또한 능력대로 대접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현세대의 풍조 속에서 그게 과연 개개인의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운이나 자질 그리고 주변의 환경 때문인지 돌아보고,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품어주고 때로는 돌봐주어야 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Estate Plan, Probate, 709 and 706

1 Estate Plan(상속계획)

상속계획의 목적은 사후, 재단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금액으로, 세금을 절약하면서 분배하는 것이다.

상속계획의 도구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will, Living Trust, Healthcare Directive, Power of Attorney를 많이 쓴다.

전통적으로 A-B Trust 또는 A-B-C Trust를 Living Trust에서 많이 써왔는데 Portability라는 제도가 생겨서 A-B Trust가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으니 각 케이스 별로 연구하여야 한다.

2 Probate (유언검증)

Probate의 목적은 고인의 유서대로 재산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Probate가 비용과 시일 때문에 대부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상속 분쟁이 있는 경우 Probate를 거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Probate는 관할 Probate 법원에 Petition을 제출하여 Administrator를 승인받고 신문 광고, 감정을 거치며 FTB 및 Dpt of Health Service에 고인이 빛이 있나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야 한다.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면 판사에게 재산 분배 Propose를 하여 승인되면 County 등기소에 판결문을 등기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3 709(증여세보고)

목적은 고인의 유서대로 재산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Probate가 비용과 시일 때문에 대부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상속 분쟁이 있는 경우 Probate를 거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Probate는 관할 Probate 법원에 Petition을 제출하여 Administrator를 승인받고 신문 광고, 감정을 거치며 FTB 및 Dpt of Health Service에 고인이 빛이 있나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야 한다.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면 판사에게 재산 분배 Propose를 하여 승인되면 County 등기소에 판결문을 등기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4 706(상속세보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Will, Trust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모든 고인의 재산을 감정한 후 해당 Schedule에 나열한다. (Schedule A ~ PC)

이것이 community 재산이면 1/2을 차감해주고 page 3, part 5의 Recapitulation Schedule로 옮겨 적는다.

위 합계를 form 706 page 1으로 적은 후 상속세액을 계산한다.

이후 평생 상속 증여세 Credit을 빼고 DSUE를 빼면 상속세 납부액이 나온다.

상속세 보고 기한은 사망시부터 9개월 이내이고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5 After That

IRS는 허위 감정에 대하여 납세자 및 706 작성자에 대한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706 file 후 약 9개월 후 IRS에 \$67을 내고 상속세 보고 review가 끝났는지 물어보면 답을 해준다. 전에는 자동으로 결과를 알려주었는데 이제는 신청해야만 알려준다.

706은 작성기회가 많지 않기에 많은 CPA들이 변호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case를 보면서 study하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윤한 / Yoon Han Kim, CPA
ykim@jdycpas.com

해외소득 및 해외자산을 미처 보고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해외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Streamlined Procedure)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미 영주권자 혹은 이민을 고려하는 한국 거주자들이 요즘 가장 고민하고 문의를 많이 하는 사항이 바로 Streamlined Procedure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입니다.

한미 이중 국적자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해외국가에 거주하는 분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해당국가에만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미국의 연방 세법상 보고/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못 인지하고 누락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주로 누락하는 보고사항

- FBAR / FATCA 해외금융자산 보고
- 해외법인 / 파트너십 보고
- 외국인으로부터의 증여 / 상속 보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건당 \$10,000부터 누락계좌 잔고의 50%까지 페널티가 책정되며, 해외 법인이나 파트너십, 증여 등 미보고한 사항에 따라 추가 페널티가 있어 미보고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사 등)들이 실제로 해외자산에 대한 부분을 은행계좌개설 시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FATCA 동의서도 철저히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자산 보고의무에 대해 뒤늦게 인지하고 이를 해결 할 방법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 바로 오늘 안내드릴 Streamlined Procedure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입니다.

Streamlined Procedure는 미 국세청 (IRS)에 해외 자산을 보고하지 않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잘못된 신고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및 해외자산을 누락한 경우 이를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Streamlined Procedure는 미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SFOP)와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SDOP) 두 가지 서브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세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FOP)은 미국 외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세무 의무자들을 위한 서브프로그램입니다. 지난 3년간 단 1년이라도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페널티는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DOP)는 미국 내 거주 중인 세무 의무자들을 위한 서브프로그램으로, 위 SFOP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난 6년간의 각 연도별 연말기준잔액의 합계 중 가장 높은 합계의 5%를 페널티로 납부해야 합니다.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은 미국 세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세무 의무자들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정확한 보고를 통해 미국 세무부과를 피하고 미래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무 의무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과 수입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과세 기간 내에 미국 세무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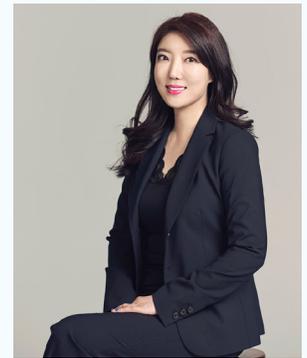
2023 IRS Tax Forum에서 IRS Representative에게 얻은 정보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8~9만 명 정도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은 IT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FATCA (해외금융정보교환법)와 관련하여 여러 국가 간에 교환된 해외 금융 계좌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분류하여, 해외 금융 계좌 보고가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패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Streamlined Procedure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는 미국 세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실수로 인해 보고 및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분들을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하여 정확한 보고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부과를 피하고 미래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RS는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충분한 신청자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닫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의무를 몰라서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늦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산과 수입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과세 기간 내에 미국 세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아름 / Agnes Ah Reum Han
유에스텍서비스(주)
arhan@ustaxes.co.kr




GROWING TOGETHER

Growing with the community as one.
Providing strength for all.
CBB Bank will be here every step of the way.

Member
FDIC

cbb Bank

Carbon Credit Market

최호건 / Hokon Choe, CPA
hchoe@cckcpas.com



탄소중립이라 하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탄소 발자국 (Carbon Footprint) 은 조금 더 생소한 단어지만 이미 1970년도부터 외쳐왔던 지구 환경문제를 대표하는 Key Word 라 생각합니다. 탄소가 지구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7 Kyoto Protocol을 시작으로 2015 Paris Agreement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조금 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를 Pre-Industrial Level에 섭씨 2도 내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노력들이 요구됩니다. 필자도 2017년도부터 태양광 전기와 전기차 사용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대략 500 Ton 정도의 Carbon Offset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개인보다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는 연간 74 Million Tones에 달하는 탄소를 대기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론 Google 같은 Cloud Software Company에서도 2020년까지만 해도 연간 10Million Tones에 달하는 탄소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Google 은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40여개에 Carbon Offset Projects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ESG Rating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을 Corporate Image 측면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시대에는 탄소중립은 모든 비즈니스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Forestry, Renewable Energy, Clean Water, Conservation, Waste Management, Agriculture, Blue Carbon, and Various Community Projects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겨날 전망입니다.

Carbon Credit이라는 Concept 도 탄소중립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난 새로운 Asset Class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Assets과 마찬가지로 Carbon Credit 은 만들 수도 있고 사고팔 수도 있습니다. Carbon Offset에 경제적인 Incentive 를 더함으로써 더 많은 Carbon Offset Projects들이 생겨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A 가 연간 5 Million Tones에 탄소를 대기로 방출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2030 년도 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두고 있다면 언급한 Google 같이 자체적인 Carbon Offset Projects를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은 Carbon Credit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금은 많은 Carbon Offset Projects 를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1 Carbon Credit 은 1 Metric Ton에 Carbon Offset 을 뜻합니다. 회사 A 경우 5 Million Carbon Credit을 구입함으로써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1 Carbon Credit 이 \$29.4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ee attached graph).

회계법인들의 역할이 Carbon Credit Market서 차지하는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회계사들이 함으로써 신뢰와 정확성을 보태고 있습니다.

Posted December 14, 2022

California and Québec Carbon Allowance Prices



Notes:

1. California and Québec held their first joint auction in November 2014.
2. Current Auction Settlement Price is the price at which current vintage allowances sold at auction.
3. Auction Reserve Price is the minimum price at which allowances can be sold at auction.
4. Secondary Market Prices are a composite of commodity exchange futures contract prices for near month delivery and a survey of OTC brokered transactions for California Carbon Allowances. Secondary market prices are provided with permission of [Argus Media Inc.](#)
5. Secondary Market Price data drawn on December 13, 2022.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arbon Footprint Assessment : 회사들의 Operation 에서 생겨나는 Greenhouse Gas Emission 을 측정하고 수치화 하는 일. 2. Emission Reporting : Emission data 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정확하게 Regulatory Body 에 보고하는 일. 3. Carbon Credit Verification : Carbon offset 이 실제이며 추가적이며 정확하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일. 이 확인은 Carbon Credit 발급의 필수 조건입니다. 4. Carbon Credit Accounting : Carbon Credit 에 올바른 회계처리와 회계표준을 준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일. 5. Compliance and Regulatory Reporting : 환경 규정준수에 맞는 보고요구 사항 등을 조언하는 일. 6. Strategy & Advisory :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는 일. 이는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며 Carbon Credit Market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Financial Assurance : Carbon Credit과 관련된 배출 데이터 및 Carbon Credit 거래의 감사와 인증을 제공하는 일. 8. Tax and Incentives : Carbon Credit과 관련된 세금 영향 및 인센티브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지속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크레딧 및 인센티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일. 9. Risk Management : Carbon Credit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도록 도와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명예 적 및 재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일. <p>점점 회계사들의 역할이 인공지능에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회계사들도 신뢰와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
|---|--|

절세 전략과 Long-Term Care Plan



이성혁 / Stephen Lee, CPA
sleeepa@choileecpas.com

Californian의 장기 요양을 위한 계획(Long-Term Care Plan-“LTCP”)에 대한 의무화 추진에 따라, LTCP 가입에 따른 납세자들의 장기 요양의 막대한 잠재적 비용에 대한 계획적 대비와 더불어, LTCP에 있어서 관련된 세제 혜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물론 한 가지 대표적인 옵션이 있다면 자기 보장 (직접 치료 비용을 충당할 만큼 저축등의 수단등)의 방법이 있지만, LTCP 은 보험료가 비싸고, 설상가상으로 인플레이션 라이더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는 계속 증가세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불가능한 플랜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LTCP의 옵션은 요양원 치료, 가정 내 건강관리, 생활 지원 등 특정 유형의 치료를 제한할 수 있어서, 모든 가입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비용의 증가와 가입에 따른 지출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효과적인 절세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전략적 수단으로써 가입 비용의 부담을 절세로 상쇄 시킴과 동시에 비과세 적립 방법을 통해 미래 지향적이고도 성공적인 은퇴 플랜이라는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건강 저축 계좌(Health Saving Account-HSA)

HSA는 장기 요양 비용의 저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2003년에 만들어진 HSA는 상당한 세금 절약, 자금 이월,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장기 요양 자기보험 계획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 HSA에 불입하는 금액은 세전이거나 세금 공제가 가능하므로, 불입하는 개인의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HSA에 투자되어 얻은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되므로, 이자, 배당, 자본등의 이득에 대한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 합당한 의료 비용에 대한 HSA 지급 혹은 사용은 면세 대상이며, 따라서 건강 관리에 사용되는 경우 인출에 대하여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HSA를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요양 비용을 저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HSA는 개인이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매년 이월 할 수 있게 하며, HSA는 이동이 가능하므로 개인이 고용주의 변경 혹은 은퇴 시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HSA는 개인이 다양한 상호 기금이나 다른 증권에 투자가 허락되어 일반 저축 계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많은 장점과 더불어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개인이 메디케어와 같은 다른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므로, 65세에서 메디케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HSA에 불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HSA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에 DEPENDENT로 포함될 수 없으며, 65세 이전에 비자격 의료비용으로 HSA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2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가 지불하는 장기 요양 보험 (LONG-TERM CARE PLAN)



이는 IRS 법(IRC 106)에 따라, 고용주가 요건을 충족하는 LTCP의 비용을 직원들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고용주는 직원들을 위하여 납부한 LTCP의 보험료를 사업의 합당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세제 혜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LTCP 셋업을 위해서 적격 한 보험회사 선택이 필수 조건 이입니다.

중요한 조건으로는 전문 간호 돌보미, 중간 돌보미, 가정 건강 관리, 또는 성인 주간 돌보미에 대한 보험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건은 하루에 \$ 3,000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혜택을, 그리고 평생에 \$ 200,000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고용주가 직원에게 생명 보험 혜택 (직원이 LTCP의 혜택을 이용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을 포함하는 LTCP를 제공한다면, 보험료는 LTCP과 생명 보험 혜택 비용 두 가지 요소로 나뉘게 되고, 고용주는 보험료의 두 요소를 모두 공제할 수 있지만, 직원에게 과세되는 것은 생명 보험 요소뿐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FSA 또는 HSA를 통해 구입된 LTCP에 대한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밖에 다른 제안 사항들도 존재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는 필수 조건입니다.

3. SECURE ACT 2.0

2022년 12월 29일에 제정된 SECURE ACT 2.0에는 납세자들이 장기 요양 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핵심적인 은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벌금 없는 은퇴 계획 연금 지급

SECURE ACT 2.0은 은퇴 계획 참가자들이 장기 요양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한 계획에서 연간 최대 \$2,500까지 인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출은 일반 소득과 같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혜택을 위해서는 최소 LTCP 은 최소 3년의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하루 최소 \$100의 혜택을 가지고, 연간 최소 5%씩 혜택이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라이더가 있어야 합니다.

• 장수 연금 계약 (Longevity Annuity Contract) 한도 제거

또한, SECURE ACT 2.0은 고령인들의 생활 후반기에 보장된 소득 원천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절세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격을 갖는 장수 연금 계약 (QLAC)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양을 증가시켰다는 점입니다. QLAC은 은퇴 계좌에서 자금을 조달한 유예 연금이며, 지급이 시작될 때(최대 85세까지) 필요한 최소 의무 지급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ECURE ACT 2.0은 이전에 존재하던 25%의 은퇴 계좌 평가 한도를 제거함과 동시에, QLAC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135,000에서 \$200,000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으로 증가시켰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529 PLAN ROTH ROLLOVERS

2024년부터, 529 대학 저축 수혜자는 자신의 자금 중 최대 \$35,000을 세금과 벌금 없이 ROTH IRA로 ROLLOVER 할 수 있습니다. 529 PLAN은 교육비보다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대체플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은 529 PLAN의 세금 면제 성장 혜택, 포함 가능한 주 세제 혜택, ROTH IRA의 세금 면제 성장과 인출 혜택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저축된 529 PLAN을 가진 젊은 납세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전략적 관리는 LTCP 자체의 보험 전략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세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15년 동안의 529 PLAN에서 \$ 35,000을 ROTH IRA로 ROLLOVER 했다고 전제해 보자. 이 납세자는 개인이 67세(현재 은퇴 연령)에 도달할 경우, ROLLOVER로 적립은 은퇴 구자는 연평균 7%의 증가율을 반영한다면, 연간 \$ 6,500의 성장이 \$35,000의 상한선까지 도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600,000 이상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29 PLAN의 최소 15년 이상 유지, ROLLOVER는 연간 ROTH IRA 불입 한도의 제한을 받고, 529 PLAN 자금의 수익 부분만이 ROLLOVER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원금과 지난 5년 동안의 수익은 ROLLOVER 자격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기대수명의 연장은 상대적으로 노년에 닥칠 각종 상해, 질병, 노령화에 따른 인지 능력 저하 등에 대한 많은 불안 요소와 그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재앙에 대한 현실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개인실 비용은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비용과 가정 내 건강 관리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출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높은 노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보험 또는 그에 상응한 계획이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도움과 필요성이 시장에서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I left Korea in 1967 when I was 7 years old. Although I am married to a Korean woman, who came to the US when she was 19 years old, I am still unfamiliar with the Korean culture and language. I could speak Korean, but the nuances and ever-fast-changing Korean culture leave me at a disadvantage in Korean social settings. As a result, I have been fostering my American side more than my Korean side, as it is easier to master.

So why do I keep coming back to the Korean community? It is because of belongingness. I am accepted just as I am because we are going through a similar experience, called the American Experience.

I felt this when I was helping the Korean American victims of the LA Riots in 1992, instead of taking up guns and fighting the looters. That singular experience cemented my identity as an American, Korean American. Although there are those who oppose me just because of how I look, how I speak, or where I came from, America held its arms open to me to plant my roots here, because of its commitment to the 14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https://www.archives.gov/milestone-documents/14th-amendment>

Prior to this experience, although I wanted belongingness to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 shied away from it because I was not fluent in Korean and its culture. I also did not want to submit to those who used their better knowledge and mastery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project their superiority, often closing off the community from the outside world. We learned from the Chinese that building walls do not work.

The main mission of KASCPA is to help accountants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and increase diversity through education, information, and exchanges with members and related professionals required in the accounting profession.

본 협회의 주 임무는 회계 직업에서 요구되는 교육, 정보 및 회원과 연관 전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회계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https://kascpa.org/about-us/#mission>

It is my hope that KASCPA will be able to deliver on this mission statement. I see a great future for KASCPA if it is able to improve Korean Americans' professionalism and increase the diversity required in the accounting profession. One way to do this is to break down the walls to include more Korean-American accounting professionals, empowering them to succeed in the accounting profession.

According to the NPR article [6 Charts That Dismantle the Trope of Asian Americans As A Model Minority](https://www.npr.org/2021/05/25/999874296/6-charts-that-dismantle-the-trope-of-asian-americans-as-a-model-minority), published on May 25, 2021 by Connie Hanzhang Jin,

<https://www.npr.org/2021/05/25/999874296/6-charts-that-dismantle-the-trope-of-asian-americans-as-a-model-minority>.

Asian Indian American households are the highest-earning group among Asian Americans, with a median household income of \$127,000 a year. The same article noted the following statistics:

1. 4.3 million Asian Indians in the US,
2. 1.9 million Koreans in the US, and
3. Korean households in the US median household income is around \$80K, which is slightly higher than the U.S. median household income of \$66,000.

One organization, which contributed greatly to increasing the wealth of Asian Indian Americans is the Asian American Hotel Owners Association, or AAHOA,

<https://www.aahoa.com/resources/oxford-study>. 40 years ago, a group of Asian Indian American hotel/motel owners banded together to fight discrimination by forming AAHOA. Their mission is to be “the foremost resource and advocate for America’s hotel owners.” Today, Asian American Indians own 60% of hotels/motels in the U.S. They employ 1.1 million employees earning \$47 billion annually. How did they achieve this? By pulling their resources and empowering each other through education and networking to compete and win in the mainstream.

I don’t know exactly how KASCPA would achieve this, but I hope that it would take the first step toward it by being more inclusive and transparent for all to see and take ownership of the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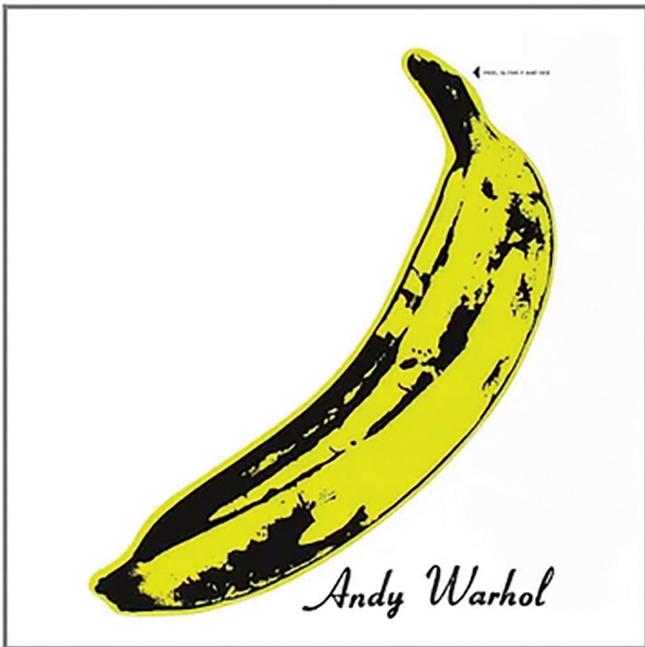
Steven Y. C. Kang, CPA
steve@ksgallp.com





Kanye and George

Music and art have always had a connection. In modern times, musicians often engage artists to create album cover art. An example was Andy Warhol's print of a banana serving as the cover for The Velvet Underground & Nico in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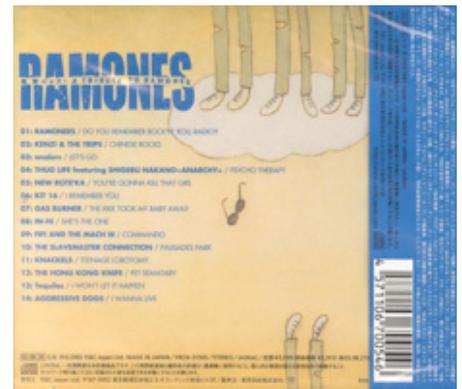


Music and art have always had a connection. In modern times, musicians often engage artists to create album cover art. An example was Andy Warhol's print of a banana serving as the cover for The Velvet Underground & Nico in 1967. The first room looked like this, with actual covers from his album collection serving as an art piece in its own right:



Nara himself has been responsible for creating album covers and videos for many bands, inclu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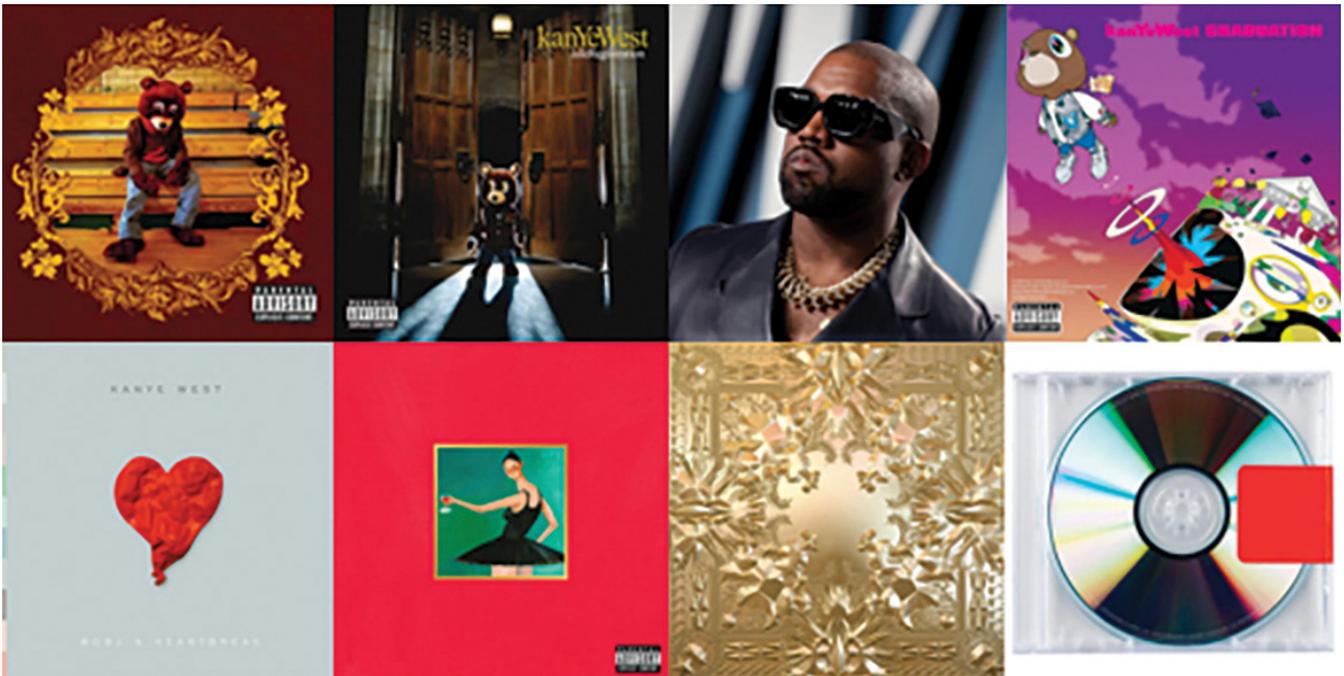
1. Shonen Knife, an all-girl pop-punk band from Osaka, Japan, gained international fame when Kurt Cobain, a longtime fan, personally invited them to open for Nirvana.
2. Bloodthirsty Butchers, an indie/punk band from Sapporo, Japan, broke up when their front man died in 2013.
3. R.E.M., the iconic alternative rock band from Athens, Georgia, collaborated with Nara to release an animated music video for the song "I'll Take the Rain" from their 12th studio album Reveal.



He even did one for a Ramones tribute album.

A more recent partnership was with the rapper/producer Kanye West and George Condo, a visual artist who works in painting, drawing, sculpture, and printmaking.

As with many influential and important music artists, Kanye had a “classic period” that encompasses his first seven albums, including an extended collaboration with Jay-Z. He has often been identified by the press and fellow musicians 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hip-hop music and an inspiration for other rappers to take more creative risks with productions.



In particular,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released in 2010, stands out, not only for Kanye, but as one of the best and most influential albums across all of popular music at the time. It received universal acclaim from fans and critics alike, but also generated comments like “nobody halfway sane could have made this album.”¹

The album was recorded after a particularly controversial period for Kanye. During the 2009 MTV Video Music Awards, he went on stage as Taylor Swift was giving her acceptance speech for winning the best female video award for “You Belong with Me”. He grabbed her mike and declared, not once but twice, that “Beyonce had one of the best videos of all time!”² He was loudly booed and was promptly removed from the show. Condemnations came fast and furious, including no less than two U.S. Presidents, Barrack Obama and Jimmy Carter.

¹ Rob Sheffield of the Rolling Stone

² CNN



In response, Kanye retreated to a self-imposed exile in Hawaii. There, he recorded his masterpiece with input from many prominent artists and producers, including Jay-Z, John Legend, Rihanna, Chris Rock, Nicki Minaj (who stole the show with her verse on “Monster”), Bon Iver, Elton John, RZA, Mike Dean, Rick Ross and No I.D.

Leaning heavily on maximalist aesthetics, Kanye incorporated various elements and influences from his previous work, including progressive rock (“Power” has a killer sample of King Crimson’s “21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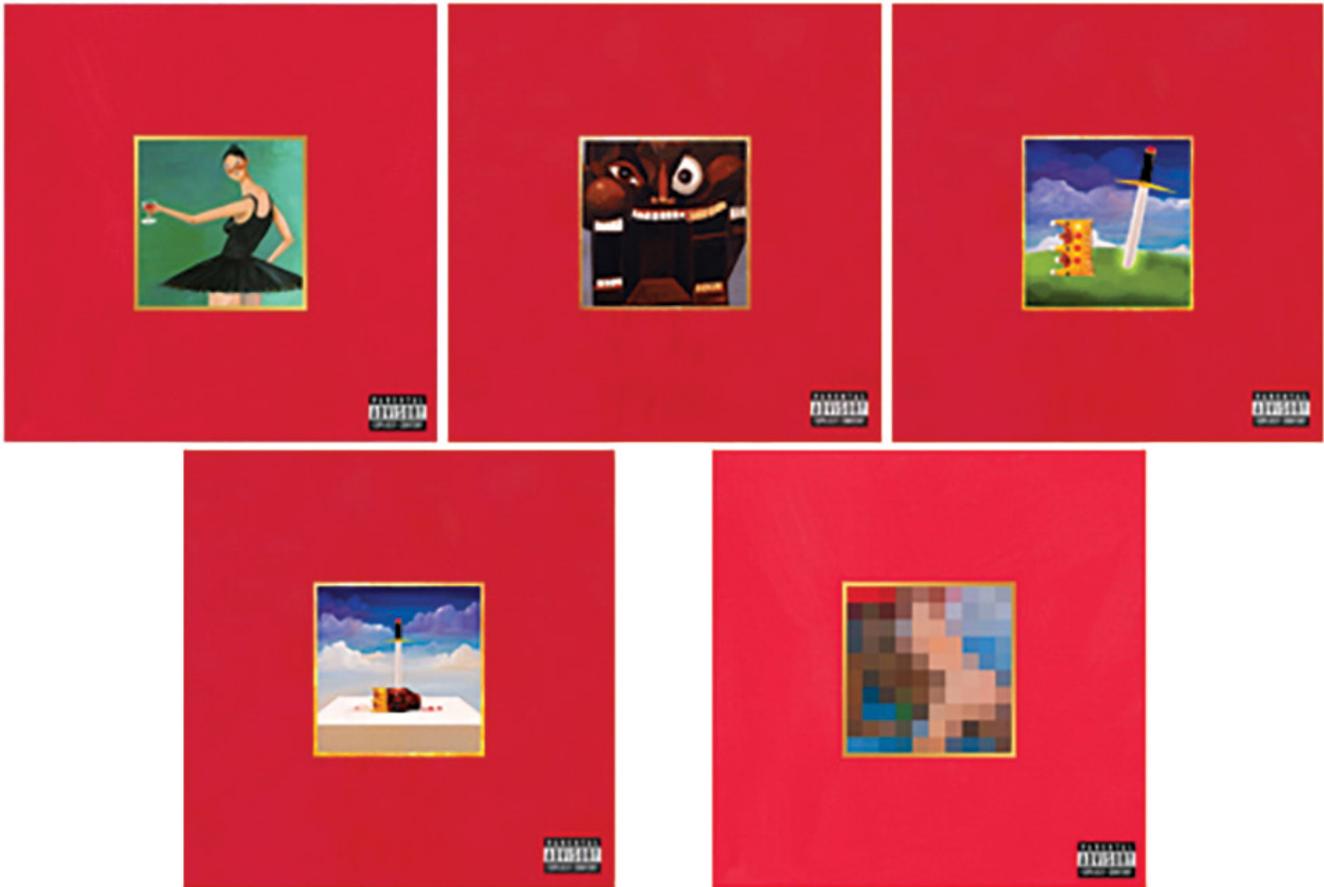
Century Schizoid Man”), soul, electro-funk, baroque instrumentation, heavy metal (“Hell of a Life” was clearly inspired by Black Sabbath’s “Iron Man” and the riff is used heavily), as well as classical music.

Such an important album requires an important artist to create a worthy cover art. Kanye’s choice was George Condo, who has a musical background. Condo studied various instruments when young and majored in musical theory in college. As an art student in Boston during the late-70s, he played bass and electric viola in a punk band, the Girls. While playing a gig in New York, he met Jean-Michel Basquiat, who was also playing that night with a band called Gray. The two artists/musicians developed a bond and “became good friends.”³ Condo then moved to New York and became a full-time artist. During the early-80s, he worked at Andy Warhol’s Factory.

Here's Condo describing his experience working with Kanye:

“It’s great to have Kanye West to collaborate with. He works off my paintings and my paintings work off his music. He does in music a lot of the stuff I do in painting sampling, appropriating, presencing. He doesn’t think of himself as a hip-hop artist but as an artist. Even his public persona is part of that art it’s another instrument he plays. (theguardian.com)”

Kanye and Condo met several times during the process. During the visits, the two listened to Kanye’s music and brainstormed ideas for Condo to create. Their collaboration resulted in eight to nine paintings. Five of them were selected to function as interchangeable album covers that are included with each album.



NOTE: Due to the explicit nature, the fifth cover has been pixelized.

According to the New Yorker, Condo stated that Kanye was looking for “something that will be banned.”⁴ Anyone who has followed Kanye would not be surprised by such comments. He certainly took advantage when Apple, Target and Walmart (though denied by Walmart) banned the album covers and tweeted: “Yoooo they banned my album cover!!!! Banned in the USA!!! They don’t want me chilling on the couch with my Phoenix!”⁵ Condo also benefited as the noise swept through the internet and exposed his art to Kanye’s 2¼ million followers.

As with many aspects of Kanye’s life,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arguably him at the peak of his power, has also been tumultuous, but the result has been highly creative and entertaining. As a companion piece to Kanye’s music, Condo’s artwork has also been controversial, engaging and amusing and just like Fantasy, a true original.

3 George Condo The New Yorker

4 The New Yorker

5 The Guardian

Bibliography

<https://www.artnet.com/artists/george-condo/biography>

<https://www.avclub.com/kanye-west-my-beautiful-dark-twisted-fantasy-1798166605>

<https://blue-vagabond.com/2021/06/12/yoshitomo-nara-kawaii-with-a-dark-twist/>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4/feb/10/george-condo>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1/jan/11/kanye-west-album-cover#:~:text=Kanye%20West%27s%20provocative%20album%20cover,publicity%20stunt%20by%20Kanye%20West.>

<https://www.hauserwirth.com/artists/26942-george-condo/>

<https://hypebeast.com/2010/11/new-york-magazine-george-condo-explains-his-five-covers-for-kanye-wests-twisted-fantasy>

<https://www.mtv.com/news/a4m0ba/kanye-west-my-beautiful-dark-twisted-fantasy-hell-of-a-life>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1/01/17/portraits-of-imaginary-people>

<https://pitchfork.com/news/40616-kanye-west-reveals-multiple-album-covers/>

<https://ohnotheydidnt.livejournal.com/55547132.html>

<https://pitchfork.com/reviews/albums/14880-my-beautiful-dark-twisted-fantasy/>

<https://www.sartle.com/blog/post/the-george-condo-and-kanye-west-collaboration>

<https://www.soundoflife.com/blogs/people/the-most-expensive-artist-in-japan-talks-music-yoshitomo-nara-and-his-love-for-rock-punk-folk>

https://www.vulture.com/2010/11/kanye_george_condo.html

https://www.washingtonpost.com/lifestyle/style/a-dark-twisted-fantasy-revealed/2011/02/17/ABQo8aJ_story.html

William Lee, CPA
wxlee33@gmail.com





"2022년 미국 내 베스트 은행 1위"

"풍부한 경험의 프로페셔널 뱅커 274명"

"미국 전역 16개 지점, 7개 론 오피스"

"매년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장학생 선발 총 130명"

"고객과 늘 함께해 온 성장과 도약의 20년"

*2022년 BANK DIRECTOR 선정 '미국 내 The Top 25 Banks' 부문 1등 은행 **2023년 7월 31일 기준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의 내일을 만듭니다.

PCB BANK 창립 20주년!

오늘의 큰 성장이 있기까지, 든든한 믿음이 있기까지,
 함께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mypcbbank.com



AMSTAR Advisors 는 연금 플랜을 전문 으로 합니다.

편안한 나의 노후를 설계하다!

평생 라이프 평생 인컴

SIMPLE LIFE! • RICH LIFE!



평생
인컴

2가지 종류의 보너스 혜택
 2가지 종류의 인컴, 장애시 더블 인컴
 2가지 종류의 사망시 지급

INDEX
ANNUITY

INDEX ANNUITY

[인덱스 연금]

S&P 500 INDEX 수익률 +
 원금보장 / 세금연기 / 보너스 혜택

NO
RISK

1불도 손해보지 말자!
 NO RISK + NO FEE

25%
BONUS

CD / IRA / SEP / 401K / 연금

ROLLOVER 하셔서 UP TO 18-25%
 까지 BONUS 혜택을 받으세요.

401K
 ROLLOVER

☑ 가입과 ☑ 동시 ☑ 즉시 ☑ 연금 ☑ 지급 ☑ 플랜도 ☑ 가능!

CD

401K

ROLL
OVER



Direct

213.344.8900



3600 Wilshire Blvd., #1614 Los Angeles, CA 90010



gkangadvisor@gmail.com



PRINCIPAL GRACE KANG
 CALIC. #0C02747

한국 내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한국은 부부재산 별산제이어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국 거주자에 대해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한 5억 원으로 해서 최소한 10억 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도 하여 주지 않으며, 일괄공제 2억 원밖에 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등 부부재산 공유제를 실시하는 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속세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있던지 간에 부부 공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은 생존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그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부부재산 공유제를 시행하는 주의 부부들은 한국 재산에 대해서도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만 상속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위 재산들이 결혼생활 중에 돈을 벌어서 취득한 재산이라면 남편 단독명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유재산이므로 그중 절반만 남편 재산이어서 그 50%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 국세청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조세 심판이나 조세행정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상속세를 절반으로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돌아가시기 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여 놓으면 재산전체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해놓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공동재산이 맞으므로 그렇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에 같이 살고 있다면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그렇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재산 공유제가 아닌 다른 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국 내 부동산을 전세를 주고 전세 보증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온 이후에 사망하게 되면 그 전세 보증금이 채무로서 상속 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재산의 액수를 줄여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미국으로 전세보증금을 송금하고 나면 그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한국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증여세나 상속세율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하면 50%의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상속을 받은 후에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는 42%입니다.

양도차익은 취득가와 판매가의 차액이며, 상속 시에는 상속 재산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공제한도 내에서는 상속재산의 가격을 최대한 높여 놓는 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은 소유자 1인당으로 계산합니다.

즉 어느 부동산의 소유자가 1명이고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세율이 35%여서 35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2명인 경우에는 1인당 양도차익이 5천만 원이 되고 5천만원에 대한 세율은 24%이므로 2명이 각각 1200만 원씩 내게 되어 합계 2400만 원을 내게 되므로 결국 양도소득세가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1인 단독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고, 상속의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다 같이 등기를 하여서 명의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183일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다 받으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즉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장기보유공제를 30%까지 밖에 해주지 않으므로 그만큼 양도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거주자로서 매매를 하면 1 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 등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단지 183일만 거주하는 것보다는 약 2년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매도하시는 것이 거주자인지에 대한 논란을 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종건 / Jong Lee 변호사
JKLAWUSA, APC
jklawus@gmail.com

비즈니스의 보호 및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2022년 통계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0%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지식재산권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타사의 모방을 제한하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하므로, 경쟁 상황에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는, 비즈니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고 어떠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지를 판별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신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면, 그들의 지식재산권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그 반대 상황의 경우, 우리의 신제품이 카피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행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크게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비밀이 있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 실용특허, 디자인특허 및 식물특허가 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할 때, 실용특허나 디자인특허로의 보호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허 확보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를 출원하면 일정 기간 후 발명이 공개되므로 경쟁사도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만약 새로운 발명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발명을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전략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조치와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상표권은 브랜드에 대한 권리로, 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는 주로 단어나 로고 형태가 있지만, 제품이나 패키지의 디자인 등도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로서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표등록 없이도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하기는 하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면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즈로 확장시킬 계획이 있다면 상표등록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아마존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은 문학, 음악 또는 예술 등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창작자에게 해당 작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작품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권리행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행사(Enforcement)를 통해, 경쟁사의 카피 행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권리 행사 방법은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재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권리를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적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특허청에서는 특허 무효 심판이나 상표등록 취소소송과 같은 다양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절차들이 제한적인 이슈들을 다루기는 하나 연방법원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아마존, 유튜브와 같은 전자상거래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리스팅 혹은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해당 플랫폼의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저작권 소액재판 제도가 도입되어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저작권 관련 소송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액재판에서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비침해에 대한 선언, 그리고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의한 허위 진술 등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최대 3만 달러로 한정됩니다.

상표나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이를 관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도 기록하여 침해 제품의 수입 시 적발되어 압류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는 특허나 상표 침해 소송을 통해 수입물품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도 해당 도메인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권리행사 방법들을 이해함으로써, 경쟁사의 모방 행위에 대한 대응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견고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 확보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확보할 지식재산권의 종류, 필요한 시간과 비용, 카피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권리행사 전략,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별 확보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쟁사의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경우, 관련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채희동 / Heedong Chae 변호사
LUCEM
hdchae@lucemlaw.com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상속을 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받은 분들은 쉰든 종든 한국 세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세금제도도 만만치 않은데 한국의 세금제도까지 알아야 하는 미주 한인들의 고충은 상당하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세금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분야마다 법령이 따로 있는 데다가, 그 분량도 많고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원칙과 예외가 너무 다양하여 복잡하기도 하다. 거기다 법령이 거의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을 따라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세법에 대해 매우 어렵게 생각하시고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¹ 요건이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한국 세법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한다. 예컨대, 한국 소득세법 관점에서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즉 미국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 내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국 세법은 여러 비과세나 세금 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차별을 두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 공제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장 중요하데, 1세대 1 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있어 거주자는 최고 공제율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최고 공제율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에,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도 원칙적으로 거주자만 적용 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이 한국 세법상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주 한인분들 중 미국에 재산이 많고 한국에는 재산이 약간만 있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한국 재산에 대한 비과세나 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 있는 재산이 적어 그 효과가 미미한데 비해 미국에 있는 많은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미국의 많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필요는 없게 된다.

한편, 거주자가 미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 협정상 미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 그 차액이 있을 경우 한국에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 주(State) 세는 (연방 세와 달리) 한미 조세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주에 내야 할 수 있는데,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미국 소득에 대한 한국 세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교가 된다. 이런 점들을 보면, 한미 양국의 세율, 과세대상, 공제 요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¹ 이하 “거주자”만 언급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은 무엇일까? 거주자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1) 주소를 두거나 (이른바 ‘주소 요건’), (2) 183일 이상 거소 (이른바 ‘거소 요건’)를 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 2). 여기서 ‘거소 요건’은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할 때까지의 기간이 1 과세연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로서 그 뚜렷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주소 요건’은 한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한국 내 재산,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한미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내용이 복잡한 탓에 두 가지를 모두 신경 써야 하는 미주 한인들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국적”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냐”라고 문의하신 적이 있다. 아마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신 것 같다. 미국 세법과 달리,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는 국적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².



또한, “거주기간”에 대한 오해도 있다. 어떤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한국에 가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느냐”라고 문의하신 적이 있다.

아마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거주기간 요건 (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신 것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개인이라고 규정하는데, 183일 이상의 거주기간만이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아니며, 당사자의 직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쉽게 말해, 당사자가 한국에서 실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소나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로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의 세법상 모두 거주자가 될 수 있는 “이중 거주자”에 대한 오해도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족, 재산, 직업 등이 있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도 되어 한미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경우, 결국 어디의 거주자로 최종판단 되는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² 참고로, 한국 세법과 외국환관리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데, 두 법의 거주자 요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한편, 부동산 관련 법령은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한다. 이러한 법 체계로 인하여, 미주 한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돈을 송금하는 일련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절차에서 국적과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 경우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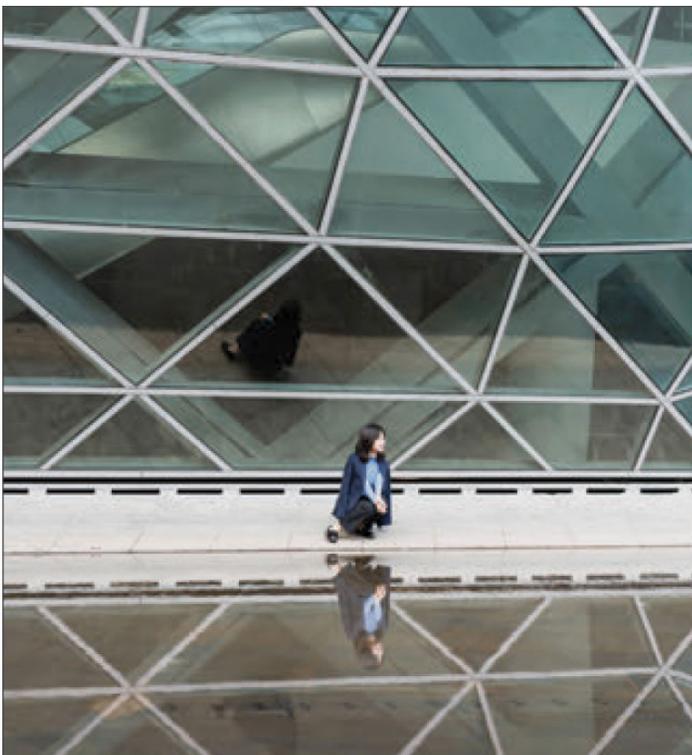
당연히 양국 모두 거주자로 판단되면 세금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한미조세조약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한 쪽의 거주자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한미조세조약의 소위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에 의하면, 항구적 주거지, 국적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되, 그 판단이 어려울 경우 한미 과세당국이 상호합의하여 거주자국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 본인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유리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는 궁극적으로 과세당국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국세청과 미국 과세당국의 상호합의 절차를 거쳐 거주자국을 판단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거주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정들을 미리 맞추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납세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오해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자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한미 양국 간 세무, 회계, 법률 전문가들의 공조와 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러한 공조와 협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한인들의 복잡하고 골치 아픈 한미양국 간 세금이슈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진희 변호사
K-Law Consulting
lee@k-lawconsulting.com



We see
dimensions
others can't from
perspectives
others don't

글로벌 1위 상업용 부동산 회사 CBRE는 업계 최고의 프리미엄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CBRE Korea Desk 를 통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에서부터 모든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한국어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RE Korea Desk는 KACPA 협회와 더불어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변함없이 최고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에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CBRE KOREA DESK

Lex Yoo
First Vice President

C. 213. 537. 9691 E. Lex.Yoo@cbre.com
400 S Hope St, 25th Floor, Los Angeles, CA 90071

CBRE

직장 내 차별 소송 및 성희롱 소송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알아야 할 네 가지



캘리포니아에서 차별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는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라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케이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 및 회사 파티 등이 재개됨에 따라 성희롱 케이스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직장 내 차별 방지와 괴롭힘,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정확히 인지

첫째,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법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추가된 카테고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 또한 업데이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는 직장 밖에서의 대마초 사용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카테고리가 추가되었다. 현재 Civil Rights Department (구 DFEH)의 웹사이트에는 총 12개의 차별 금지 카테고리가 리스트 되어 있고, 캘리포니아 상원의 웹사이트에는 총 18개의 리스트가 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취향, 결혼여부, 병력, 건강 상태, 출신, 장애, 병가요청, 임신 및 출산 병가 요청, 나이 (40세 이상) 등의 이유로 어떠한 고용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이다. 현재 핸드북이나 차별 금지 지침서에 모든 카테고리를 리스트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적절한 지침서, 효과적인 직원 교육 필요

둘째, 성희롱의 정의와 예시를 명시한 적절한 지침서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적절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이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도 명확히 적혀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고로 인해 직원이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성희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를 설명해 주고 자세히 읽어보게 한 후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지침서를 새로 만들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직원들에게도 읽어볼 시간을 주고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좋다. 그리고 평소에 이러한 지침서와 방침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재확인시켜주고 고용주가 성희롱과 차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직원이 5명 이상 되는 사업체는 반드시 성희롱 및 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른 직원을 관리하리 하는 슈퍼바이저는 두 시간, 일반 직원은 한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슈퍼바이저와 일반 직원의 교육 내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내부조사 진행 후, 적절한 조치

셋째, 직원의 내부 컴플레인이 있을 경우 바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원이 성희롱이나 차별 등으로 인해 컴플레인을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 및 모든 증인들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의 지침서에 따른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과정, 인터뷰 내용과 결론 등은 문서화해서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조사 과정 중 직원들에게 직접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것보다 조사하는 사람이 듣고 정리해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직원들의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외부의 조사관을 고용해 조사 및 조언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기준 적용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은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이 드러나 해고 조치를 했는데, 다른 직원은 비슷한 이유로 경고만 받아서는 안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와 해고 사이에 근신, 교육 이수, 행동 개선 계획, 좌천 등의 인사조치가 있다. 인사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한 사람만 ‘봐주기’식의 조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차별 소송이나 괴롭힘, 성희롱 등의 이슈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관련 법을 잘 알고 핸드북 업데이트와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적절한 조사와 빠른 조치를 통해 소송에서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박수영 변호사
Barnes & Thornburg LLP
spark@btlaw.com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사전준비 및 혜택



자녀들이 대학 진학 시에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가정의 재정상황에 맞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이다. 이러한 재정보조는 크게 연방정부 및 주정부, 그리고 대학의 재정보조 장려금 및 장학금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재정보조금 내역에는 부모가 스스로 부담하는 부분과 부모의 연방정부 융자금도 모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의 신청방법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어떠한 사전 준비와 진행을 통해서 이를 극대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자녀가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수월히 면학을 통해 사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여부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져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면 미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Step 1 재정보조 혜택과 자격조건

미국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자면 아마도 모든 신분의 학생들에게 다 적용될 수가 있다. 그러나, 각 대학 별로 혹은 주립대학과 사립대학별로 그 자격조건과 수혜 범위 구분에 따라서 차별이 대별되므로, 학생의 신분과 거주지에 따라 사전에 지원할 또는 진학하는 대학들을 잘 선별함으로써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신분과 가정 형편에 따라 재정 지원을 통해 면학을 잘 마치고 사회 진출로 원하는 꿈을 이뤄나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사전설계는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도 신중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신분이 매우 중요하다. 최소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신분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든지 상관없이 국내 소득이든 해외 소득이든 재정 지원을 받는 데는 문제 없이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주립대학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하는 대학이 거주민 학비를 지원할지 여부에 큰 차이를 보인다.

타주에 있는 주립대학을 지원 시 등록금이 3만 달러 이상 더 차이가 나는 이유도 대학이 위치한 해당 주립대학에서 비거 주민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으므로 그러한 차이만큼 부모가 등록비를 더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학비는 재정보조 계산에 총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인 재정보조에 많은 불이익이 있다. 국제학생이나 Undocumented 학생들도 모두 국제학생 그룹에 속하므로 International Student Aid를 지원하는 대학이 주로 사립대학으로써 미국 내에 대략 200개 대학이 넘기에 이러한 대학에 지원하며 가정 형편에 맞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다. 물론, DACA 나 Undocumented Student 일 경우에 주정부에 따라서 In-State Tuition 적용범위나 상황에 큰 차이가 있으며 재정보조 지원에도 주정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성적의 기준은 GPA가 Unwaited를 기준해 4.0기준에 최소한 2.0은 넘어야 지원받는 자격이 균등히 부여된다.

Step 2

학자금 재정보조의 종류와 혜택

학자금 재정보조는 연방정부 보조금의 경우, 지원자의 자격이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가 있다. 연방정부 보조금의 종류는 크게 펠그랜트인 무상보조금과 연방 학생 용자금 등의 유상 보조금 및 학부모가 지원하는 연방 용자금 (i.e., PLUS)으로 나뉜다. 펠그랜트는 매년 연방정부가 정한 최대 수혜액에서 SAI (i.e., Student Aid Index) 금액을 공제한 부분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대 7천 달러 내외에서 지원받게 되며 유상 보조금 형태로 학생 용자금은 연간 \$5,500 ~\$7,500 정도로 학년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학위 프로그램의 1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에 1개의 전공분야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다.

주정부의 지원금은 대학이 위치한 주가 어느 주인가에 따라서 거주민 혜택을 받을 경우에 지원받는 액수와 종류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CAL Grant A인 경우에 연간 1만 3천 달러가 넘는다. 메릴랜드 주인 경우에 최대 연간 3천 달러 이상을 넘지 않는 대조적인 주정부 혜택의 차이가 난다. 조지아주일 경우에는 성적에 따라서 Hope Scholarship 과 J. Miller 등의 혜택으로 인해 지원자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의 경우는 대학이 보유한 School Endowment Fund와 같이 재정보조 기금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부에 따라서 지원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 거의 전액이나 최소한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무상보조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점에 착안해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큰 수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게 진학할 수 있다고 필자가 그 동안 1,500여 칼럼을 통해 누차 강조한 바와 같다.

Step 3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 바뀐 재정보조 계산공식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보조 예산이 날로 갈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새로운 SAI(Student Aid Index) 계산 공식에 따른 신청서 양식도 금년에 많이 업데이트되었다. 최근 새로이 업데이트된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심층 분석하면 앞으로 학부모들에게 혼선이 예상된다.

금년도 FAFSA 신청서 제출이 12월 중 언제 시작될 예정인지도 연방정부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우선 제안된 신청서 공식을 분석해 보면 우려되는 문제와 제출 내용의 계산에 큰 반전이 있다. 결론부터 논하자면 내년도 재정보조에 비상이 걸렸다.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을 할 때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미 국세청(IRS)에 자동 연결해 단순화한 신청 절차로 쉽게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세청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넘어오는지조차 지원한 대학에서 합격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바로, Need Blind Policy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제출된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오는 정보가 과연 얼마나 자세한 정보가 넘어오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고 합격 후에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과 신청서 제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원자들을 위해 정부가 Paper 신청서를 구비해 놓고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서의 모든 질문 내용은 재정보조 계산에 모두 반영이 되는데, 부모의 Asset Protection Allowance 금액을 적용하지 않았던 예년과는 달리 만약 부모의 나이가 48세 경우에 \$6,600달러까지 자산에서 SAI 계산을 배제함으로써 재정보조 혜택을 더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전처럼 종업원의 수가 100명 미만이면 사업체의 순자산을 부모 자산으로 가정 분담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연방정부 공식에도 단 1명의 사업체나 자영업일지라도 자산을 부모 자산으로 합산해 계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면에서 가정이 분담해야 할 분담금, 즉 재정보조 지수 금액(SAI)을 더 높여주어 실질적인 재정보조 혜택에 크게 축소된 것이다. 물론, 사립대학들이 사용하는 공식에는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통해 예년처럼 순자산을 계산해 부모의 자산에 포함시켜 SAI를 더욱 높여 계산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이나 부모의 Untaxed Income이 문제이다. Untaxed Income 이란 IRA/SEP IRA/SIMPLE IRA/401(k)/TSP/403(b) 등 개개인이 Control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각각의 플랜에 불입할 때에 세금공제를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므로, 예전에

FAFSA에서 질문하지 않았던 추가질문 사항이 적용되는 범위를 더 크게 늘려 오히려 가정에서 수입을 적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를 모두 Panelize 시킨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재정 보조 지원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세금을 절약하며 동시에 은퇴 자금도 적립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낮은 수입의 가정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는 의도를 매우 불건전하게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플랜을 통한 혜택을 모두 몰 수하는 방식으로 SAI를 높이겠다는 기본적인 정부의 의지이다.

재정보조금의 구성은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 및 학부모가 지원하는 모든 범위이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동안 형평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연방정부가 표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의도인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크게 넓힌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질적인 혜택 면에서 지원자들의 수혜 범위가 확대된 대학들의 대부분이 총비용이 매우 적은 주립대학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정도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가정들이 지원받는 수혜 폭은 오히려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입과 세금을 동시에 절약하며 재정보조 혜택을 늘리는 방법은 오로지 사업하는 가정에서는 사업체에서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플랜을 설치해 세금공제와 은퇴를 위한 혜택을 늘려가는 방안밖에 없다. 혹은, 월급으로 생활하는 가정들의 경우에 IRA/Roth IRA/SEP IRA/SIMPLE IRA방식이나, 401(k)/403(b)/TSP등이 오히려 불이익을 낳게 되어 이에 대한 지연불입등의 상황적인 사전설계를 통해 재정보조 불이익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Step 4 재정보조의 선택과 진학준비 방안은?

대학의 재정보조 혜택의 범위는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서 재정보조 필요분의 계산에 있다. 재정보조 필요분이란 총비용에서 SAI 금액을 공제한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이다. 따라서, 만약 어떠한 사립대학의 연간 총비용이 9만 달러가 필요한데 SAI금액이 1만 달러가 나왔다면 8만 달러가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며 평균 통계로 볼 때에 조지타운 대학의 경우에



이러한 금액의 100퍼센트를 재정보조 지원을 하며 이 중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보조금 형태인 재정보조용 장려금이나 기타 장학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83퍼센트인 것을 보면 확실히 동일한 SAI 금액의 가정에서 주립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보다 이러한 사립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 재정 부담이 더 적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지원자 중에서 해당 대학에 등록을 해주기 선호하는 지원자에게 1차적으로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의해 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등록을 원하는 Preferred Student에 대한 프로필을 사전 준비를 통해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합격률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재정보조 지원도 더욱 잘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순간부터 이러한 입학 사정에 대한 진학 준비와 재정보조 준비를 동시에 시작해야 함은 물론이다. 재정보조란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시점보다 2년 전의 수입과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보조와 입학 사정에 대한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그 이유는 매년 세금보고는 일년에 한번 하는 일이므로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게 많은 이자수익이 발생을 해도 다음 연도에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수익 부분에 대한 Schedule이 세금보고 상에 금융기관과 자세한 내역이 나오게 되므로 이로 인해 실질적인 사전 준비를 해 놓지 못할 경우에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입학 사정에는 합격/불합격을 판가름하는 입학원서의 구성이 1) Academic Index, 2)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3) Personal Qualification으로 크게 구분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지면상 생략하겠으나 무엇보다 철저한 이해와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Step 5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과 사전준비방안은?



합격한 대학에서 재정보조 내역서, 다시 말하면 재정보조 제의를 받았을 때에 무엇보다 가정의 재정 형편에 따라 계산된 SAI 금액에 대비해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따른 평균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해당 연도의 재정보조 평균 지원 퍼센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렇게 지원받는 금액에서 무상보조금의 퍼센트가 평균치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판단이 될 때에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지속적인 어필을 통해 재정보조 지원금을 조절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알고 진행해야 하는 학부모들이 해당 대학에 대한 데이터와 활용 방안을 거의 모르고 진행한다는 데 대해서 호소력이나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가 효율성이 없는 재정보조 어필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은 매우 신중히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한 후에 진행해야 할 문제가 신중한 사안일 것이다. 각 가정마다 재정적인 형편과 수입과 자산의 형태가 달라 해당 가정마다 실질적인 사전설계와 준비 시점은 크게 달라져야만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단순히 직장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는 즉, W-2의 수입이 있는 가정의 경우는 학부모들이 사전설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 경우는 직장에서 적립하며 세금에서 공제하는 은퇴 플랜이 재정보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새로이 적용되는 재정보조 공식에는 이러한 401(k)/403(b)/TSP/SEP IRA/SIMPLE IRA 등의 플랜에 적용하는 연간 공제 금액을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 이러한 플랜으로 받는 모든 혜택만큼 SAI 금액을 그 이상으로 증가시켜 계산해 모두 헛수고가 되도록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Corporate Trust 방식을 통해 재정보조 진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전에 설계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401(k)/403(b)/TSP인 경우는 Contribution Delay Technique을 사용해 준비해야만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공제금액을 세금보고에 적용하기 전의 높았던 수입에서 계산되는 학생 재정보조 인덱스(SAI)보다 훨씬 높은 분담금이 계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매년 변동 적용되는 재정보조 공식과 대학의 재정 지원 퍼센트의 비율이 현실적으로 정부 예산과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자녀들에게 미치는 재정보조의 가치기준의 소중함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어떻게 사전설계를 통해 대비를 시작했는지 여부에 따라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실패하지 않는 학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학부모가 성공하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는 실패는 당연하지만, 노력하고도 실패를 한다면 재정보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정보조의 실패는 절대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자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Richard Myung
AGM Institute LLC
remyung@agminstitute.org



김석원 / Michael Kim
Blue Anchor Financial Services Inc.
michael@blueanchorins.com

ROTH IRA Conversion

몇 년 전 우연하게 방문했던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ROTH IRA를 향한 열렬한 지지를 잊을 수 없다. 투자는 무조건 인덱스 펀드로, 은퇴계좌는 무조건 ROTH IRA로 해야 한다고 명제처럼 주고 받던 내용이 기억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는 이유는 너무 명목적이어서인 듯하다.

타이레놀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해열제가 판매되고 있는 것은 다른 방식의 해열제가 어떤 사람에게든 더 효율적인 치료를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IRA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득 공제의 혜택과 또한 일부 계층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보조 확대에 대한 혜택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IRA의 혜택이기에 명목적인 한방향으로의 주장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여길 수 없다.

ROTH IRA가 주는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가까운 미래에 증세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언급함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매력적인 재테크 방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IRA에 대한 혜택 때문에 혹은, 여건상 은퇴준비에 ROTH IRA로 자산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은퇴가 가까워 오거나 은퇴 후에라도 ROTH IRA로 변환을 추진해 볼만하다. 소위, IRA나 401(k)과같은 Qualified Funds은 은퇴 후 인출 시 100% 소득세가 부과되는 세전 연금 구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후 소득세에 대한 부담없이 은퇴자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ROTH IRA conversion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렌탈인컴이나 이자 소득만으로도 생활비가 충분히 감당되는 소득계층의 경우 굳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IRA계좌에서는 가급적 인출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대한 규정은 피할 수 없기에 인출은 불가피하다.

요즘처럼 안전투자를 선택하더라도 5~6%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많은 만큼 IRA자산은 불어나기 마련일 것이다. 결국 이렇게 불어난 자산 총액에 대해서 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이고, 설사 사용치 않고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ROTH IRA로 전환된 자산들은, 인출 시 전액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며, RMD에서도 의무인출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산소득세율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니, 자산이 투자나 이자로 증식하여 커지기 전에 미리 소득세를 부담하고 나중에 투자나 이자증식으로 커진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ROTH IRA conversion이 큰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볼 수 있다.

ROTH Conversion을 실행하기 위해서 IRA로부터 일정금액을 인출하여 ROTH IRA로 입금하는 Conversion과정을 진행하면 되고, IRA에서 인출된 금액만큼은 해당 연도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 IRA인출 금액에 대한 결정은 회계사와 상의하여 IRA인출로 인해 늘어난 소득세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어야겠다. 예를 들어 나이가 50대나 60대에 전체 금액의 10%씩 혹은 그 이상을 적정한 기간에 걸쳐 IRA를 인출하여 ROTH IRA로 전환시켜 놓는다면, 향후 10년 20년 후에 걸쳐 증식된 자산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면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 없이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하거나 상속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다. 다만, 전환 후 5년이내에 인출을 하게 된다면 10% 벌과금을 물리게 되니 유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HSA (Health Savings Account)



세금보고를 하는 시즌이 다가오면 늘 절세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개인 IRA나 Roth IRA, SEP 또는 직장에서 제공해 주는 401K 등의 절세플랜을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세플랜은 먼저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인출 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적립 시 세금혜택을 받지 않고 나중에 인출 시 Tax Free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세 플랜 중 유일하게 적립할 때도, 인출할 때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바로 HSA(Health Savings Account)입니다. 그래서 HSA는 IRS에서 제공하는 Tax Benefit 중 가장 Powerful 한 Benefit이라고 생각합니다.

HSA는 3가지 세금 혜택들-

- ① HSA에 적립
- ② 어카운트에 생성되는 Earning, Gain 세금유예
- ③ 메디컬비용

이러한 HSA는 3가지 세금 혜택이 있는데, 첫째는 HSA에 적립하는 금액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절세 플랜과 마찬가지로 최대 적립금이 있는데 2023년 기준 개인은 \$3,850, 가족은 \$7,750이고, 55세 이상은 \$1,000을 추가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A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세금보고 전까지 적립하면 됩니다.

둘째는 어카운트에서 생성되는 Earning이나 Gain도 일반 다른 절세플랜과 마찬가지로 세금유예 혜택을 받고 증식시킬 수 있고, 셋째는 메디컬 비용으로 사용하면 Tax Free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혜택을 Triple Tax Advantage라고도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어야 적립이 가능한 다른 플랜과는 달리 렌탈수입등 근로소득이 없어도 적립할 수 있고, 수입에 대한 상한선이 없으므로 고소득 납세자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HSA에 세금 혜택 후, 적립 4가지 조건-

하지만 이런 HSA에 세금 혜택을 받고 적립을 하려면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높은 Deductible을 가진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각 보험회사마다 HSA 또는 HDHP (High Deductible Health Plan)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보험은 직장 또는 개인 그리고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Market Place (캘리포니아는 Covered CA)를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둘째는 다른 건강보험을 갖고 있으면 안 되며,

셋째는 Medicare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65세가 돼서 Medicare를 갖게 되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습니다. 단 65세가 되어도 회사 보험을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은 적립할 수 있는데, 회사보험이지만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은 적립할 수 없습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HSA에 적용을 통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3가지 혜택뿐만이 아니라 Market Place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은 세금 공제를 통해 수입을 낮추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늘어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FAFSA신청 시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를 낮추어 주므로 더 많은 Grant나 Loan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 자주 다니는 분들은 높은 디덕터블을 갖고 있으면 디덕터블까지는 본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HSA플랜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입 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Tax Free로 사용할 수 있는 메디칼비용으로는 닥터 오피스나 병원에 지불하는 모든 비용, Copay, 치과치료, 안경, 렌즈, 처방전 약값은 물론 비처방전 물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동수단, 호텔, 음식 등도 지불 가능합니다. 또한 제한적이긴 하지만 롱텀케어 보험료의 지불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65세 이후에만 HSA에서 지불할 수 있지만 Unemployment기간 중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지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HSA는 은행에서도 제공하지만 Fidelity 같은 Brokerage Firm에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증식 후 은퇴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HSA도 IRS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플랜이므로 Rule이 있고 이 Rule을 지키지 않으면 Penalty를 부과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메디컬 비용으로 사용하면 Tax Free이지만, 65세 이전에 메디컬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인출 시에는 인출금에 대해 Income Tax는 물론 추가로 인출금의 20%를 페널티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생활비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 시 Income Tax 만 내면 됩니다. HSA는 매년 정해진 맥시멈 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계속 롤오버 되기 때문에 인출 시까지는 계속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HSA는 후에 Retirement Tool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세플랜이 그렇듯이 나에게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비교 검토한 후 플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Joanne M. Park
UNI & Good Friend Insurance
joannepark@goodfriendins.com

2024년도 미국 부동산 전망

‘Success isn’t just about making money.
It’s about making a difference.’

인생에 있어서 나름의 성공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과거의 기준과 현재의 기준 그리고 미래의 기준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가 목적이 아닌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그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물질적 풍요가 아닌 과연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변화의 중심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의 중심에는 바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투자 철학은 해당 국가 그리고 그 지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 곳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상향, 우하향의 장기 곡선은 수요와 공급에 기인하며, 단기적인 곡선은 주택 가격 결정에 주요한 요인인 대출금리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30년 고정 대출금리는 2월 6.09%에서 7월 6.96%, 그리고 현재는 7.79%이며, 8%가 넘는 은행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월 대비 7월까지 30년 고정 대출금리는 약 1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약 28%가 오른 수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해야겠지만, 다행히 금리 상승 바로 전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로 대한 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은 현재 홀로 고독한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독한 시점은 지난 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케이스-실러 지수(S&P Case-Shiller Home price Index) 에 따르면 2022년 6월을 고점으로 2023년도 1월까지 308.304에서 292.854로 약 5% 정도 하락을 하였다.

그러나 2023년 2월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하여 데이터가 제공 되는 시점인 8월 기준 309.404로 전 고점을 상회하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전 세계의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는 각국의 부동산 투자 매력을 반감시키며, 거래 급감 및 거래 절벽이라는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ED)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의 재고를 살펴보면, 2022년 9월 123만 채에서 2022년 12월 96만 채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점차 상승하며 전년 동월 대비하여 부족하지만 2023년 9월 기준 113만 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나, 재고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매도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부터 2021년 중반까지 미국에서 역대 최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대한대출을 받은 지속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집을 내놓거나 갈아타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매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택 가격을 낮춰서 매도를 시도할 텐데, 금리가 내려가면 본격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매매되는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거래량을 살펴보면 2022년 9월 46.8만 채에서 2023년 1월 40만 채로 줄어들었으며, 2023년도 2월 45.5만 채로 반짝 상승하였으나, 최근 9월 기준 39.6만 채로 감소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의 재고는 늘어나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부족하나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량까지도 반등을 하게 되면 가격 상승의 방향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도 초에는 금리의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감히 예측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금리 수준이 어깨 이상까지는 올라왔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또다시 빅스텝(0.5% 포인트 인상) 혹은 자이언트 스텝(0.75% 포인트 인상)의 이야기보다는 0.25% p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하락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의 인하는 대출금리의 인화로 이어지며, 고금리고 인하여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물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니,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감수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하고, 이후 금리가 낮아지면 대한 대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실제 주택 구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매매 심리의 변화는 곧 포모증후군(FOMO Syndrome)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모두 주식투자자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투자를 하지 않아서 돈을 잃어버린 듯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놓치면 후회하는 기회' 'Fear of Missing Out'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만 뒤쳐진 것 같다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변하지 말아야 할 투자 철학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투자자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강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학군이 좋은 곳들과 꾸준하게 인구의 유입이 되고 범죄율이 낮은 곳들을 항상 학습해야 하며, 나만의 투자의 법칙을 만들고 그러한 법칙들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간으로 이를 수 없고, 또한 부동산 투자는 주식과는 달리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많은 학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그 핵심은 금리의 인하 속도가 될 것이며, 거래량 증가 속도가 부동산 가격의 속도로 결정될 거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될 2024년도에도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지키며 큰 숲을 보길 바랍니다.



어태수 / Eric Eo
Neozips
e eo@neozips.com



Moving Forward with **WOORI AMERICA BANK**

Woori America Bank is reliable and wholly-owned by Woori Bank in Korea

Woori America Bank provides various financial products for business customers. Please experience our financial services for your busines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a branch near you or call a loan officer at 1-888-MYWOORI(699-6674).

All loans are subject to credit approval. Fee, interest rate and terms of loan are determined at the time of approval. Other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may apply. There are eligibility requirements, conditions and exclusions that could prevent you from receiving benefits. You should carefully read the contracts for a full explanation of the terms.

Our California Network

Olympic Branch

3360 West Olympic Blvd., Suite 100
Los Angeles, CA 90019
Tel: (213) 738 - 1100

Wilshire Branch

3540 Wilshire Blvd., Suite 104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2 - 8700

Fullerton Branch

5731 Beach Blvd., Suite 101
Buena Park, CA 90621
Tel: (714) 521 - 3100

Buena Park Branch

6940 Beach Blvd., D-124
Buena Park, CA 90621
Tel: (714) 534 - 6300

Irvine Branch

14252 Culver Drive, Suite G
Irvine, CA 92604
Tel: (949) 885 - 3760

Torrance Branch

2390 Crenshaw Blvd., Unit C
Torrance, CA 90501
Tel: (310) 974 - 1880



KACPA 41ST INSTALLATION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41대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가 6월 22일 오후 할리웃 태글리안에서 신규 회장단과 이사진, 회원, 한인 및 주류사회 내빈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장학금 시상식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조한욱 신임회장이 취임했다. 이임하는 전석호 회장(왼쪽부터 일곱번째)과 조한욱 신임회장(여섯 번째)이 임원과 이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협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Part III

Business Events & Photo Gallery





Part III

Business Events & Photo Gallery



2023 KACPA GOLF TOURNAMENT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PCA·회장 전석호)가 6월 1일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기금모금을 위한 연례 골프대회 행사를 가졌다. 협회와 각계 인사 120명이 출전한 올해 대회의 수익금은 장학금 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2022 KACPA CHRISTMAS PARTY





2023 KASCPA ANNUAL CONFERENCE, San Jose, Costa Rica



2023 KACPA MONTHLY SEMINARS_JJ Grand Hotel, LA



2023 KACPA MONTHLY SEMINARS_

Doulbe Tree by Hilton Hotel, Buena Park (O.C.)



MEDIA COVERAGE

한국일보
KOREATIMES.COM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경제

전체 사회 경제 오피니언 핫이슈 한국홍소평 한국TV KTMF

경제일반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10월 정기**

댓글 2023-10-20 (금)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조한욱)는 19일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10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에퀴티블 어드바이저의 저스틴 신 파트너와 김윤한 CAP, 최지원 변호사, 윌리엄 리 CPA가 각각 강사로 나서 은퇴 계획 안내와 부동산 관련 세법, 노동법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KACPA 제공]

Monthly Seminars
(JJ Grand Hotel, 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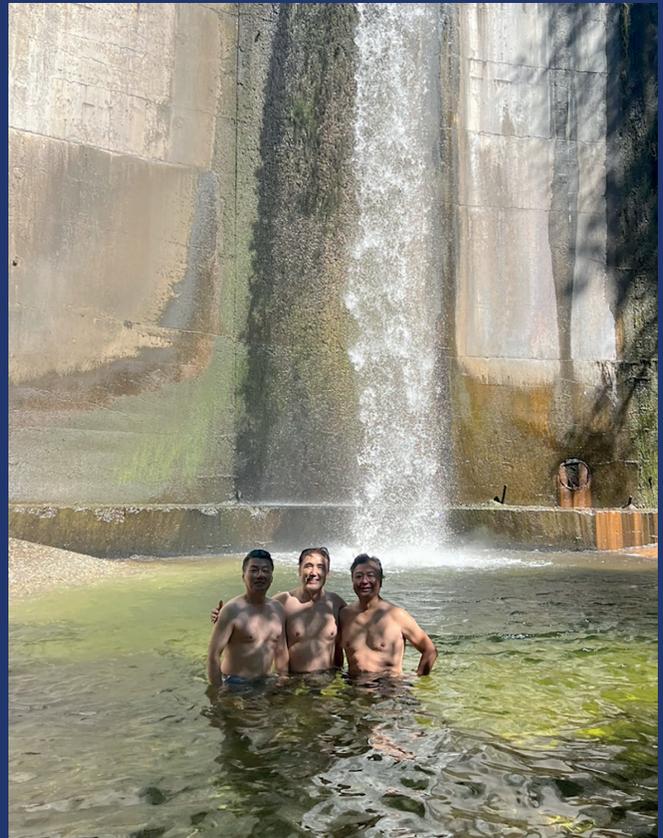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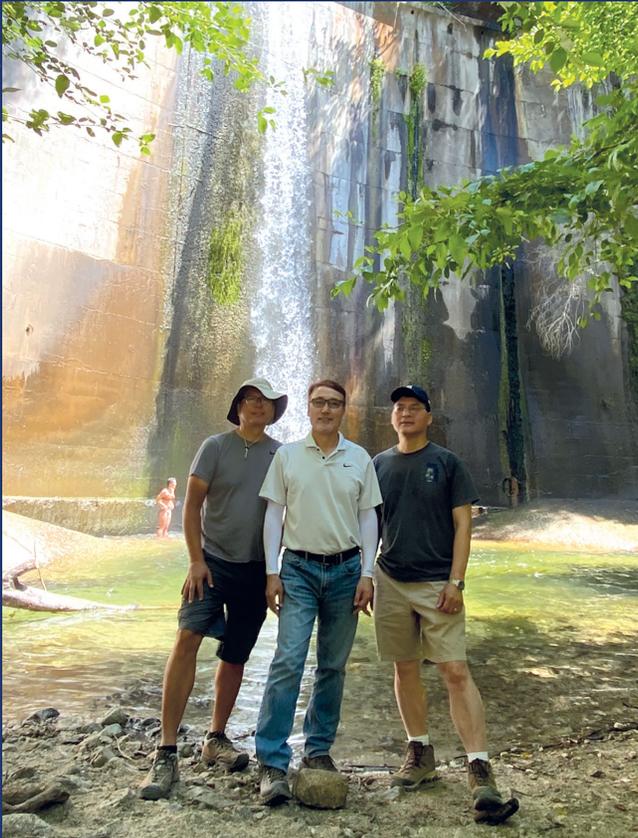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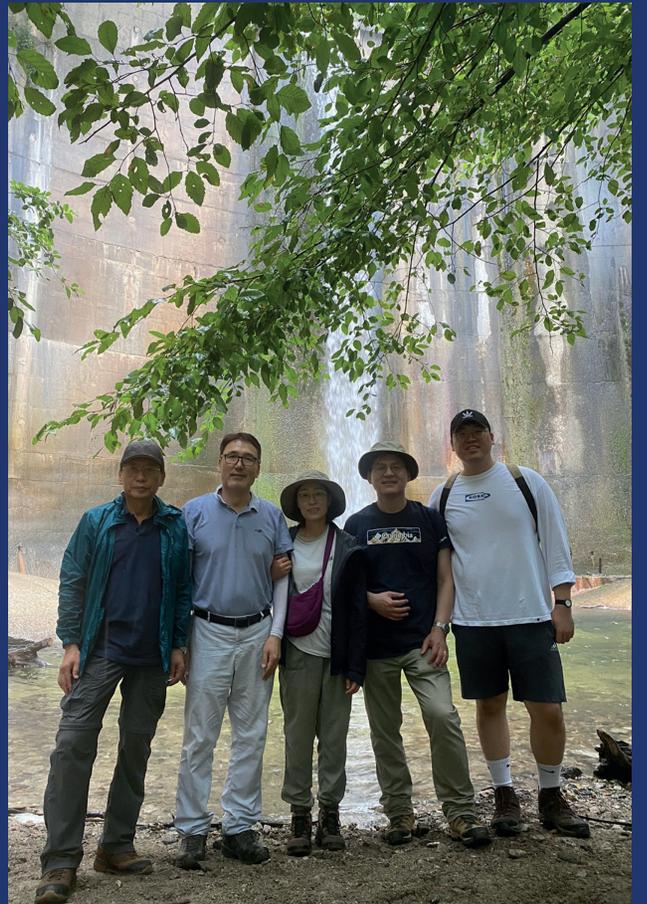
[LIVE] 라디오 서울 AM1650 보이느라디오 - 24시간 방송
23 watching · Started 3d ago

Live Tax Talk
(AM 1650 Radio Seoul)



2023 KACPA SATURDAY HIKING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Korean Americ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3010 Wilshire Blvd., Unit 313, Los Angeles, CA 90010
kacpa@kacpa.org | www.kacpa.org

역대 회장

PAST PRESIDENTS

1st	(1983~1984)	Howard Y. Ree, <i>CPA</i>
2nd	(1984~1985)	Stephen Cho, <i>CPA</i>
3rd	(1985~1986)	Young K. Oh, <i>CPA</i>
4th	(1986~1987)	Young H. Shin, <i>CPA</i>
5th	(1987~1988)	Gilbert G. Hong, <i>CPA</i>
6th	(1988~1989)	Ki Ok Kim, <i>CPA</i>
7th	(1989~1990)	Henry Kim, <i>CPA</i>
8th	(1990~1991)	Jae Y. Kim, <i>CPA</i>
9th	(1991~1992)	Bong S. Chang, <i>CPA</i>
10th	(1992~1993)	Samuel B. Choi, <i>CPA</i>
11th	(1993~1994)	Gerald B. Chung, <i>CPA</i>
12th	(1994~1995)	Jung M. Park, <i>CPA</i>
13th	(1995~1996)	Jung G. Choi, <i>CPA</i>
14th	(1996~1997)	Ben H. Lee, <i>CPA</i>
15th	(1997~1998)	Bob G. Moon, <i>CPA</i>
16th	(1998~1999)	Sung H. Hong, <i>CPA</i>
17th	(1999~2000)	Byung S. Kim, <i>CPA</i>
18th	(2000~2001)	Yoon Han Kim, <i>CPA</i>
19th	(2001~2002)	Jae S. Song, <i>CPA</i>
20th	(2002~2003)	Kyung M. Kim, <i>CPA</i>
21st	(2003~2004)	Shin-Yong Kang, <i>CPA</i>
22nd	(2004~2005)	Wohn Chul Kim, <i>CPA</i>
23rd	(2005~2006)	Charles C. Lim, <i>CPA</i>
24th	(2006~2007)	Albert D. Jang, <i>CPA</i>
25th	(2007~2008)	Jane Kim, <i>CPA</i>
26th	(2008~2009)	Kenneth C. Han, <i>CPA</i>
27th	(2009~2010)	Sung Bum Cho, <i>CPA</i>
28th	(2010~2011)	Seung Yol Kim, <i>CPA</i>
29th	(2011~2012)	Douglas Dongwan Chong, <i>CPA</i>
30th	(2012~2013)	Kiho Choi, <i>CPA</i>
31st	(2013~2014)	Steven Y.C. Kang, <i>CPA</i>
32nd	(2014~2015)	Christie K. Chu, <i>CPA</i>
33rd	(2015~2016)	Byung Chan Ahn, <i>CPA</i>
34th	(2016~2017)	Gary J. Son, <i>CPA</i>
35th	(2017~2018)	Ann H. Lee, <i>CPA</i>
36th	(2018~2019)	James M. Cha, <i>CPA</i>
37th	(2019~2020)	Jinsung Hahn, <i>CPA</i>
38th	(2020~2021)	Justin C. Oh, <i>CPA</i>
39th	(2021~2022)	Albert J. Jang, <i>CPA</i>
40th	(2022~2023)	Lawrence Jeon, <i>CPA</i>

협회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Albert D. Jang, <i>CPA</i>	Jun Chang, <i>CPA</i>
Albert J. Jang, <i>CPA</i>	Justin C. OH, <i>CPA</i>
Ann H. Lee, <i>CPA</i>	Kenneth C. Han, <i>CPA</i>
Byung Chan Ahn, <i>CPA</i>	Kiho Choi, <i>CPA</i>
Charles C. Lim, <i>CPA</i>	Kyung Moo Kim, <i>CPA</i>
Charles Lee, <i>CPA</i>	Lawrence S. Jeon, <i>CPA</i>
Christie Chu, <i>CPA</i>	Phillip Son, <i>CPA</i>
David S. Shin, <i>CPA</i>	Sally Kim, <i>CPA</i>
Douglas Dongwan Chong, <i>CPA</i>	Seung Yol Kim, <i>CPA</i>
Gary J. Son, <i>CPA</i>	Shin Suk Oh, <i>CPA</i>
Hanwook Jo, <i>CPA</i>	Shin Yong Kang, <i>CPA</i>
Henry S. Chi, <i>CPA</i>	Soh Yun Park, <i>CPA</i>
Hoon Kim, <i>CPA</i>	Spencer Hong, <i>CPA</i>
Jae Sun Song, <i>CPA</i>	Stanley Cha, <i>CPA</i>
James M. Cha, <i>CPA</i>	Stephanie Bae, <i>CPA</i>
James Y. Lee, <i>CPA</i>	Steven Y. C. Kang, <i>CPA</i>
Jinnie Jinhaeng Kang, <i>CPA</i>	Sung Bum Cho, <i>CPA</i>
Jinsung Hahn, <i>CPA</i>	Tong Won Ko, <i>CPA</i>
Jong Hwan Kwak, <i>CPA</i>	Yoon Han Kim, <i>CPA</i>
Joonsoon Choi, <i>CPA</i>	



제 41대 회장단 THE 41ST EXECUTIVE OFFICERS



President
Hanwook Jo



Vice President
James Y. Lee



Secretary
Sin Suk Oh



Treasurer
Jaden Jang



**Public Relations
Director**
Timothy Lee



**Public Relations
Director**
Andrew Choi



**Seminar
Director**
Jin Hyeong Kim



**Seminar
Director**
Hokon Choe



**Event
Director**
Mike Song



**Website &
SNS Director**
Young Min Kim



**Publication
Director**
Siho Kim



**Member
Director**
Kathy Cho

2023~2024 KACPA COMMITTEE MEMBERS

Scholarship Stanley Cha, CPA
Ilsup (Tommy) Lee, CPA
Alex Y. Lee, CPA

Executive Lawrence Jeon, CPA
Albert Jang, CPA
Justin Oh, CPA

Audit Deborah Kim, CPA

2023–2024 KACPA BUSINESS SCHEDULE

DATE	DAY	PROGRAM	LOCATION
7/8/23	Fri	Hiking 답사	Pasadena Arroyo Seco Trail
7/15/23	Sat	Hiking (1)	Pasadena Arroyo Seco Trail
7/20/23	Thu	Live Tax Talk (AM 1650 Radio Seoul)	Radio Seoul
7/22/23	Sat	Hiking (2)	Pasadena Arroyo Seco Trail
7/29/23	Sat	Hiking (3)	Pasadena Arroyo Seco Trail
8/2/23	Wed	Meeting with Corp Sponsor –Hanmi Bank	Sponsor's office
8/5/23	Sat	Hiking (4)	Pasadena Arroyo Seco Trail
8/12/23	Sat	Hiking (5)	Pasadena Arroyo Seco Trail
8/17/23	Thu	CPE Seminar	J.J. Grand
8/17/23	Thu	1st BOD Meeting	J.J. Grand
8/19/23	Sat	Hiking (6)	Pasadena Arroyo Seco Trail
8/22/23	Tue	Meeting with Corp Sponsor –CBB Bank	Sponsor's office
8/22/23	Tue	Meeting with Corp Sponsor –Bank of Hope	Sponsor's office
8/25/23	Fri	Meeting with Corp Sponsor –Equitable Advisors	Sponsor's office
8/26/23	Sat	Hiking (7)	Pasadena Arroyo Seco Trail
9/2/23	Sat	Hiking (8)	Pasadena Arroyo Seco Trail
9/21/23	Thu	CPE Seminar	DoubleTree by Hilton,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10/19/23	Thu	CPE Seminar	J.J. Grand Hotel
10/21/23	Sat	Hiking (9)	Pasadena Arroyo Seco Trail
10/26/23	Thu	Live Tax Talk (AM 1650 Radio Seoul)	Radio Seoul
11/5/23~ 11/8/23	Sun~ Wed	KASCPA Annual Conference	Intercontinental Hotel, San Jose, Costa Rica
11/16/23	Thu	CPE Seminar	DoubleTree by Hilton,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DATE	DAY	PROGRAM	LOCATION
11/18/23	Sat	Hiking (10)	Pasadena Arroyo Seco Trail
12/2/23	Sat	Hiking (11)	Pasadena Arroyo Seco Trail
12/9/23	Sat	Hiking (12)	Torrey Pines State Natural Reserve Trail
12/14/23	Thu	X-Mas Party	St. Sophia Greek Catholic Church, 1324 S. Normandi Blvd, LA, Tel. 323-737-2424
12/16/23	Sat	Hiking (13)	TBD
12/30/23	Sat	Hiking (14)	TBD
1/11/24	Thu	CPE Seminar	J.J. Grand
1/11/24	Thu	2nd BOD Meeting	J.J. Grand
1/18/24	Thu	Live Tax Talk (AM 1650 Radio Seoul)	Radio Seoul
2/8/24	Thu	Radio Seminar	TBD
2/15/24	Thu	Radio Seminar	TBD
4/20/24	Sat	Hiking (15)	TBD
4/25/24	Thu	CPE Seminar	OC
4/27/24	Sat	Hiking (16)	TBD
5/4/24	Sat	Hiking (17)	TBD
5/9/24	Thu	Live Tax Talk (AM 1650 Radio Seoul)	Radio Seoul
5/11/24	Sat	Hiking (18)	TBD
5/18/24	Sat	Hiking (19)	TBD
5/23/24	Thu	CPE Seminar	J.J. Grand
5/23/24	Thu	3rd BOD Meeting	J.J. Grand
5/25/24	Sat	Hiking (20)	TBD
5/30/24	Thu	Golf Tournament	Strawberry Farms Golf Club, Irvine.
6/1/24	Sat	Hiking (21)	TBD
6/8/24	Sat	Hiking (22)	TBD
6/15/24	Sat	Hiking (23)	TBD
6/20/24	Thu	CPE Seminar	J.J. Grand
6/27/24	Thu	The 42nd KACPA Inauguration	Taglyan Complex

K A

E

**KACPA
JOURNAL**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Korean Americ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Since 1983

P

A